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2006. 12

나성린 · 박기백 · 박형수

서 언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던 1997년 말에 60.3조원(GDP 대비 12.3%)에 불과하였던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이후 10년간 급속히 증가하여,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06년 말에 283.5조원(GDP 대비 33.4%)으로 추정되고 2010년 말에는 350.5조원(GDP 대비 31.3%)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경우에는 외국과는 달리 상당부분이 외화자산 및 용자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채무(2010년 말 전체채무의 57.1%)이고, 우리나라 보유채권(2005년 말 현재 금전채권 131조원, 총보유자산 395조원)을 감안하면 아직 우리 경제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향후 복지지출 수요의 증가와 세수 확대의 어려움을 들어 최근의 국가채무 증가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Bohn's test, tax gap 검증, IGDC지수 등 국제 재정학계에서 최근 개발된 다양한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해본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도 필요한 작업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채무 규모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IMF기준 이외의 기준으로 측정해 보고, 비록 연구자들에 의한 시산이기는 하지만 2070년까지 향후 65년 동안의 우리나라 재정을 전망하여 국가채무 증가규모를 추산해본 작업은 향후 정부의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채무 관리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보고서에 이어 앞으로 국내 재정학계나 연구소들에서 우리나라 국가부채에 관한 많은 학술적 연구 및 정책연구들이 이어졌으면 한다.

본 보고서는 한양대학교 금융경제학부의 나성린 교수가 본원의 초

빙연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본 연구원의 박기백 박사와 박형수 박사와 함께 집필하였다. 본 보고서의 일부 내용은 2005년 8월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던 제61차 국제재정학회(IIPF)에서 발표되기도 하였다. 연구진들은 본 연구를 위해 도움을 주고 세미나에서 유익한 토론을 해준 분들과 두 분의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의 추진 과정 및 보고서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준 원내 직원들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6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 용 선

요약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다양한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한다.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국가부채의 정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국가부채 증가의 추이와 그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 결과를 소개한다.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이미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 우려를 시작하였고 대부분의 검증 결과들이 국가부채 수준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줌에 따라 본격적인 재정건전화와 국가부채 감축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미국, 영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국가부채 수준을 줄이는데 성공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장기 경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경우 아직 국가부채를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Bohn's test, Tax Gap test, IGDC(국제국가부채비교) 지수,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해보았다. 첫째, Bohn's test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증가할 경우 정부가 이전보다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면 재정의 유지가능성이 확보됨을 보여주는 검증방법이다. 본 연구는 이 방법을 세 가지 자료와 두 가지 모형에 적용하였다. 먼저 자료는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data 1), 국민연금기금 흑자, 외국환평형채권을 제외하고 정부 상환 공적자금부채를 추가한 조정 자료(data 2), 순융자를 제외한 조정 자료(data 3)의 세 가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형은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Benchmark 모형의 경우와 재정운영의 근본적 변화(1982 더미)와 외환위기까지 포함한(1983-1997 더미) 구조변화 모형,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Bohn's test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Benchmark 모형의 경우 세 가지 자료 모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구조조정 모형의 경우, data 1을 사용한 모형은 1982더미를 사용한 경우 국가부채는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1983~1997 더미를 사용한 경우 지속가능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data 2를 사용한 모형은 1983~1997 더미를 사용한 경우 지속가능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data 3을 사용한 모형 또한 1983~1997 더미를 사용한 경우 지속가능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정치적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ax Gap test는 향후 재정지출 전망치에 기초하여 현재 및 미래의 재정정책 기조가 국가채무의 누적을 야기하는 지를 점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입수준을 나타내는 지속가능한 세율(t^*)과 현재의 세입수준을 나타내는 현재의 세율(t)와의 차이로 정의되는 tax gap을 계산함으로써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다. 이 경우 tax gap인 t^*-t 가 음수이면 국가부채가 지속가능하게 된다. Tax Gap test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기(1년)와 중기(5년)적으로는 우리 국가부채는 지속가능하나, 장기(40년 및 66년)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IGDC지수는 국가부채의 실적치와 그 나라의 사회·경제·인구구조·재정·정치변수를 고려한 예상치를 비교하여 그 나라의 국가부채의 규모가 과도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실적치가 예상치 보다 크면 그 나라의 국가부채는 그 나라의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큼을 의미한다. IGDC 지수 방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과도하게 컸으나 그 이후 예상치보다 줄어들었다가 1997년 외환위기이후 아직 예상치 보다는 낮지만 다시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단기나 중기적으

로는 지속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향후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잠재부채,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저하, 고령화·저출산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에 각별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5
II. 국가부채 왜 문제인가	18
1. 국가부채의 개념	18
가. IMF 기준	18
나. OECD 기준	19
다. IMF와 OECD 기준의 비교	19
라. 우리나라 기준	20
마.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22
2. 국가부채의 문제점	23
III.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추이 및 현황	26
1. 국가부채 유형	26
가. 국가부채의 범위	26
나. 부채의 유형	27
2. 국가부채 추이	30
가. 전체적인 추이	30
나. 유형별 추이	31
다. 국가부채의 변동 요인	33
라. 기 타	36
3. 광의의 국가부채	41
가. 분석에 포함된 정부투자기관 및 기금	42

나.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투자기관 및 기금	44
다. 추정 결과	45
4. 향후 국가부채 증가 전망	46
IV. 외국의 국가부채 추이	59
1. 외국의 국가부채 추이	59
2. 외국의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	63
가. EU국가	63
나. 미 국	67
다. 일 본	68
3. 외국의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78
가. 미 국	78
나. 일 본	79
V.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및 적정수준	80
1. Bohn's Test	80
가. Benchmark Test	80
나. Bohn's test with Political factors	84
2. tax gap 검증	93
3. IGDC지수(International Government Debt Comparisons Index)	96
VI. 결 론	102
참고문헌	104

표 목 차

<표 II- 1> 성질별 국가부채 현황	3
<표 III- 1> 국채의 종류	8
<표 III- 2> 주요 국채(잔액 기준)	32
<표 III- 3>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현황	3
<표 III- 4> 정부보증채무 세부내역	3
<표 III- 5> 주요 특수채(2004년 말 기준)	38
<표 III- 6> 주요 특수채 발행 현황	8
<표 III- 7> 정부투자/출자기관 변동 상황	40
<표 III- 8> 정부투자기관 현황	44
<표 III- 9> 분석에 포함된 정부투자기관	24
<표 III-10> 분석에 포함된 민간관리기금	4
<표 III-11>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투자기관	4
<표 III-12>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관리기금	4
<표 III-13> 2070년까지의 통합재정수입 전망 결과	44
<표 III-14> 2070년까지의 통합재정지출 전망 결과	6
<표 III-15> 2070년까지의 통합재정수지 전망 결과	3
<표 III-16> 2070년까지의 중앙정부 부채 전망 결과	5
<표 IV- 1> OECD국가의 국가부채 추이(OECD 기준)	61
<표 IV- 2> 아시아 주요 개도국의 국가부채 수준(OECD 기준) ...	63
<표 IV- 3> FILP의 규모 추이	70
<표 IV- 4> 일본의 국채발행 추이	3
<표 IV- 5> 1990년대의 주요 경제대책	6
<표 V- 1> Benchmark Test	8
<표 V- 2> Regression Results of Valderrama	48

<표 V- 3> Chow Test (F 값)	8
<표 V- 4> Regression Results with Dummy	98
<표 V- 5> Regression Results with Structural Change	99
<표 V- 6> Regression Results with Balanced Budget Rule	99
<표 V- 7> 단기(1년) 및 중기(5년) tax gap 계산 결과	95
<표 V- 8> 장기(40년 및 66년) tax gap 계산 결과	96
<표 V- 9> 장기 tax gap이 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96
<표 V-10> 장·단기식의 추정결과	100

그림 목 차

[그림 II-1] 국가부채의 IMF기준과 OECD기준의 비교	20
[그림 III-1] 국가부채의 추이	30
[그림 III-2] 유형별 국가채무의 추이	31
[그림 III-3] 유형별 국가채무의 변동(GDP 대비 비율)	35
[그림 III-4] 재정수지	35
[그림 III-5] GDP 대비 광의의 국가부채 추이	46
[그림 III-6] 2070년까지의 통합재정수입 전망 결과	48
[그림 III-7] 2070년까지의 통합재정지출 전망 결과	51
[그림 III-8] 2070년까지의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 재정수지 전망 결과	53
[그림 III-9] 2070년까지의 중앙정부 부채 전망 결과	56
[그림 IV-1] 건설국채 발행 추이(GDP 대비 발행 잔액)	71
[그림 V-1] 기초재정수지와 국가채무(GDP 대비 비율)	85
[그림 V-2] 우리나라의 IGDC Index	101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GDP 대비 30%를 넘어 서면서 국가부채의 적정수준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GDP 대비 80% 가까이 되는 선진국의 평균 국가부채 규모와 비교하면서 우리 국가부채 규모는 아직 낮은 편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홍보하지만 재정전문가와 국민들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와 국가부채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향후 인구 고령화·저출산화의 심화와 잠재성장률의 하락에 따라 세수증가율은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데 반해, 사회복지비 증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요구 강화, 통일관련 비용 등의 증가에 따라 정부지출의 증가율은 더 상승할 것을 고려하면 국가부채가 현재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국가부채의 적정규모를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 나라의 국가부채가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한 나라의 국가부채의 절대규모가 아무리 높아도 그것이 오랜 기간(예를 들어 50년 이상)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나라의 경제가 그 정도의 국가부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성장을 할 수 있고 따라서 국가부채가 그 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 선진제국에서 국가부채가 문제되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들이 현재의 국가부채 수준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 행해진 적은 있지만 데이터의 부족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 비해서 훨씬 긴 데이터 시리

즈와 다양한 검증방법을 동원하여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Blanchard(1990)나 Bohn(1998)의 검증방법들 중 하나를 이용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Bohn's test, Tax Gap test, IGDC(국제국가부채비교) 지수 등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각각의 검증방법이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Bohn's test는 정부의 과거 재정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므로 앞으로 정부가 재정운영방식을 바꿀 경우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해 Tax Gap test는 향후 재정지출 전망치에 기초하여 현재 및 미래의 세수증가 및 재정정책 기조가 국가채무의 누적을 야기하는지를 전망한다. 그러나 이 또한 미래의 세수전망과 재정지출에 대한 자의적인 가정에 기초하므로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검증방법 이외에 본 연구는 국가부채의 적정규모와 관련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재정지출 규모의 적정수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IEC(국제지출비교) 지수를 원용하는 것이다. IEC(International Expenditure Comparison) 지수는 각국의 재정지출의 실적치를 그 나라의 사회·경제·인구구조·재정·정치 변수를 고려한 예상치와 비교하여 그 나라의 재정지출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수이다. 이 경우 특정 재정지출의 실적치가 예상치보다 크다면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기대되는 수준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부채도 이와 같이 실적치와 그 나라의 사회·경제·인구구조·재정·정치변수를 고려한 예상치와 비교하여 그 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과도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위의 세 가지 검증방법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단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

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향후 우리 정부는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세와 재정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국가부채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있기에 논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다만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차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은 국가부채의 개념을 자세히 정리하고 국가부채의 문제점을 그 경제적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논한다. 제Ⅲ장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추이 및 현황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국가부채의 개념을 기존의 IMF기준 외에 광의의 개념으로도 파악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Ⅳ장은 외국의 국가부채의 추이와 증가요인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제Ⅴ장은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앞에서 언급한 Bohn' test, Tax Gap test, IGDC 지수 등을 적용하여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제Ⅵ장은 본연구의 결과를 요약정리하고 있다.

II. 국가부채 왜 문제인가

1. 국가부채의 개념

국가부채는 어떤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재정적자의 총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적자가 계속 발생하면 국가부채는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재정흑자가 발생하면 국가부채는 감소하게 된다.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져야 하는 부채의 범위에 대한 상이한 기준에 기인한다.

가. IMF 기준

IMF 기준에 의하면 국가부채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정부가 관리주체인 회계와 기금을 전부 포괄한다. 국가부채 집계시 사용하는 통계는 정부재정통계지침(GFS Manual)을 사용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보증채무, 사회보장기금의 잠재채무(준비금 부족액), 중앙은행 채무, 공기업 채무는 국가부채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보증채무와 잠재채무는 채무의 발생가능성 및 발생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우발채무이기에 국가의 확정채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현금과 통안증권 등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중앙은행의 채무 또한 국가재정상의 채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안

증권은 IMF 기준에 따르면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지만,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의 재무부채권(treasury bond)은 국가부채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기업은 정부의 범위에서 제외되기에 공기업 채무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OECD 기준

IMF 기준과 마찬가지로 OECD 기준도 일반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만 포함하나, OECD 기준은 국민계정을 정부, 금융, 기업으로 나누며, 정부부문의 범위가 협소하여 국가부채의 범위가 IMF 기준에 비해 좁다. 즉, IMF 기준상 국가부채로 포함되는 외국환 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 등이 금융부문으로 분류되고, 기업특별회계는 기업부문으로 분류되어 OECD 기준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국가부채 집계시 사용하는 통계는 UN의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ing)을 사용한다.

IMF 기준과 차이점은 OECD의 경우 사회보장기구를 정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이 경우 사회보장기구의 채무는 국가부채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OECD의 국민계정에 따른 연금채무 기준을 보면 자율적 적립식 연금(autonomous funded pension plan)은 일반정부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강제적 연금은 일반정부에 포함하고 적립부분(funded component)은 국가부채로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강제연금의 경우 적립부분의 준비금 부족분은 국가부채에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문제는 적립부분의 준비금 부족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 IMF와 OECD 기준의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말 기준 국가부채는 IMF 기준에 의하면

[그림 II-1] 국가부채의 IMF기준과 OECD기준의 비교

IMF (GFS Manual)		↔	OECD (SNA)	
일반 정부 30.7%	중앙정부	↔	중앙정부	일반 정부 20.3 %
	지방정부		지방정부	
	산재보험기금, 보험기금		사회보장기구	
			공공비영리기관	
	외평기금	↔	보험 및 연금	금융
	주택기금		공적금융	
	기업특별회계(조달,양곡,철도,통신)	↔	공기업	기업
	지방공기업특별회계(상하수도,지하철)			

GDP 대비 30.7%이고 OECD 기준에 의하면 GDP 대비 20.3%이다. 그 이유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정부부문의 포괄범위의 차이 때문이다([그림 II-1] 참조)

라.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는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에서 국가부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로 규정함으로써 IMF 기준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보증채무, 사회보장기금의 잠재채무(준비금 부족액), 중앙은행 채무, 공기업 채무는 국가부채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재정운용 방식이 다른 상황에서 IMF의 일률적 기준을 따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가부채 부담 수준을 과소평

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들이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IMF 기준 보다는 좀더 광의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부채 규모를 추가적으로 기록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여 재정 파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증채무의 경우 일차적인 상환의무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정부가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데,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사실상 막대한 보증채무를 정부가 떠안은 경험 이 있다. 보증채무가 적을 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국가부도 위기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처해 불가피하게 정부가 막대한 채무를 보증하게 될 경우 그 채무의 상당한 부분이 일차적 상환의무기관에 의해 상환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경우 상환불가능 보증채무는 나중에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많기에 이 부분을 국가채무에 포함하여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공기업의 부채 또한 해당 기관이 파산하거나 파산위기에 처할 경우 불가피하게 정부가 채무를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되면서 이전의 철도청 채무를 정부가 갚아달라는 요구가 있다. 공기업의 경우 자산이 존재하므로 부채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지만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부채 상환의무는 즉시적으로 발생하지만 자산을 즉각 처분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적 부채는 아니지만 정부가 인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부채 또한 광의의 국가부채로 기록하고 참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연금채무의 경우는 앞의 두 경우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이러한 연금기금이 적자가 날 경우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경우 이미 정부가 매년 2조원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분을 보전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용주인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경우 준비금 부족분은 당연히 국가부채로

계상해야 하고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준비금 부족분도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부채에 포함하여 기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OECD 기준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각 연금의 수급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준비금 부족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채무의 확정된 규모를 계산할 수 없는 문제는 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향후 우리 정부가 국가부채 규모를 계산할 때 통상적인 IMF 기준의 국가부채 기준과 더불어 미상환보증채무, 공적연금의 잠재채무, 공기업 채무 등을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도 동시에 계산하여 참고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국가부채는 그 성질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될 수 있다. 적자성 채무는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로서 일반회계 적자보전, 공적자금 국채전환, 지방정부 순채무 등을 포함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차체상환이 가능한 채무로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채,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주택채권 등이 포함된다. 흔히 정부는 금융성 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나 그러한 부채가 고유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즉시 처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단은 국가부채에 포함하여 재정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이 관례를 따르고 있다.

<표 II-1> 성질별 국가부채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02	2003	2004	2005
국가부채 (GDP대비, %)	133.6 (19.5)	165.7 (22.9)	203.1 (26.1)	248.0 (30.7)
1. 금융성 채무	91.1 (13.3)	106.0 (14.6)	125.5 (16.1)	147.1 (18.2)
-외국환평형기금	20.7	33.5	51.3	67.1
-국민주택기금	34.0	36.8	36.7	39.7
-재정융자특별회계	27.3	25.2	23.9	24.5
-농특회계	9.1	10.5	13.6	15.8
2. 적자성 채무	42.5 (6.2)	59.7 (8.3)	77.6 (10.0)	100.9 (12.5)
-일반회계 적자보전	26.4	29.4	31.9	40.9
-공적자금 국채전환	-	14.4	29.4	42.4
-지방정부 순채무	7.0	6.8	7.0	9.2
-국고채무 부담행위 등	9.1	9.1	9.3	8.4

자료: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2006. 3. 31.

2. 국가부채의 문제점

국가부채의 원인이 되는 재정적자의 경우, 재정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있기에 그 순효과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경제학파에 따라 그 효과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케인지안 학파의 견해에 따르면 재정적자를 통한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감세의 경우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소비의 증가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총수요 증가는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을 상승시켜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지만 긍정적 효과가 이를 상쇄한다고 본

다. 반면에 통화론자와 고전학파는 적자재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즉 통화론자들은 국채발행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고전학파는 재정적자로 인한 정부의 저축감소가 전체적인 투자의 감축을 야기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신고전학과종합(neoclassical synthesis)의 견해는 단기에는 케인즈안 이론에 따라 재정적자로 인한 총수요 증가가 국민소득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고전학파모형을 따라 자본을 감축시켜 국민소득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국가부채의 누적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재정적자의 효과와는 다르다. 국가부채의 누적이 경제성장을 초래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있지만 소모적으로 사용되어 경제성장 효과가 없을 경우엔 국민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채무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조세부담이 경감되었다면 소비 및 투자 등 지출 증가로 총수요가 늘어날 수 있으며, 재정지출 증가가 수반되었다면 사회간접자본, 공공재, 교육 확대로 자본 확충 및 민간부문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경제성장 촉진 효과가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부채의 누적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경우 재정당국이나 민간경제주체들의 행태가 변화하여 경제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첫째, 국가부채 규모의 증가가 금리를 상승시켜 민간투자를 구축(crowding-out)할 경우 한 나라의 경제는 투자 저하로 자본축적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비생산적인 부문에 지출하거나, 향후 국가부채 상환을 위한 세율인상 등을 예상하여 민간부문의 저축률이 하락하거나, 조세부담의 증가로 자본이 국외로 유출될 경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 둘째, 국가부채가 증가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가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정부는 이자지급을 제외한 재정지출 규모를 축소하거

나 세수를 증대시켜 국가부채를 줄이려 할 것이다. 전자의 경우 재정 지출 중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지출삭감이 불가능한 사회복지비와 같은 비생산적 지출을 삭감하지 못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같은 생산적 지출에 삭감이 집중될 경우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세수증대를 위한 세율인상이 투자·근로욕 감퇴 및 소비 감소를 통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부채의 증가가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어 미래의 경제성장으로 연결될 경우 국가부채의 증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미래의 경제성장은 자연스러운 세수증대를 통해 국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국가부채의 증가가 국민경제적으로 아무런 부담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부채의 증가가 정부의 정책실패로 야기된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경기부양이나 사회복지지출 증가와 같은 소모적 투자에 집중될 때 국가부채의 증가는 미래의 경제성장을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미래세대와 국민경제에 막대한 상환부담을 주게 된다. 이것은 미래 경제성장을 하락의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국민경제가 국가부채를 상환할 능력을 잃은 채 국가부채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언젠가 국가재정은 파탄을 맞게 될 것이다.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되어 국가부채의 일정수준이 유지가능할 때 우리는 국가부채가 지속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국가부채는 지속불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최근 세계 각국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인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계속될 경우 미래에 세금을 낼 세대의 수는 줄어들고 정부지출의 혜택을 받을 세대의 수는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성장마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국가부채의 급증은 우려할만한 상황인 것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Ⅲ.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추이 및 현황

1. 국가부채 유형

가. 국가부채의 범위

예산회계법 시행령(제23조 4항)에 따르면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가 국가채무의 유형에 속한다. 반면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차입의 주체로서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라고 함으로써 일반정부의 확정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산회계법에 따라 중앙정부의 채무만을 계산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105조)에서는 채무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의 채무 통계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공공기금의 채권발행(국민주택, 외국환평형, 양곡증권정리 등)과 차입금 및 공공차관이 포함된다.

국가채무의 개념은 정부(통합재정 일반정부 기준)가 정부 이외(민간, 해외)에 갚아야 할 채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 내부거래, 정부 간 거래는 당연히 제외된다. 그러나 지급보증처럼 채무의 발생 여부 또는 규모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채무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채무 규모를 계산할지가 불분명하다. 정부가 채무 이행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이 있는 반면 직접적인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궁극적으로 정부가 채무를 인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정부채무의 성질

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의 관행은 채무가 확정된 시점에 국가채무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다른 논쟁거리는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채무이다. 해당 채무도 채무 여부가 불투명하며, 채무 규모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지급률 등에 대한 법률을 변경하는 경우 채무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국가가 고용주의 역할을 하는 공무원연금 등과는 달리 민간을 대상으로 한 연금의 경우 미래 지급의무가 국가가 갚아야 할 성질의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현재의 관행은 사회보장에 의한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국제기구는 국가가 고용주의 역할을 하는 공무원연금 등은 채무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공기업의 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도 논쟁거리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정부가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지도 법률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통신과 같은 다수의 공기업은 대규모 부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채무부담이 없었으며, 오히려 지분매각을 통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도 있다. 반면 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처럼 정부의 채무 인수가 논의되는 경우도 있다.

금융당국이나 금융공기업의 경우도 채무의 성격이 불분명하다. 금융분야의 채무는 자산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채무 규모만을 보는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자산과 비교한 채무, 즉 순채무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대차대조표 방식은 사실상 순채무를 기준으로 하지는 것과 동일하다. 금융성 채무를 제외하고 채무를 계산하는 것도 사실상 이러한 관점에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나. 부채의 유형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된다. 또한 국가채무는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1) 국채

국채법에 따르면 국채는 국채발행 한도 내에서 세운 세부 발행계획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그리고 국채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이 처리한다.

2004년에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제1종만 발행되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필요에 따라 발행되고 있는데 2002년까지는 매년 발행되었으나 2003년과 2004년에는 발행실적이 없었고, 2005년에는 다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였다. 공공용지보상채권은 제도상으로는 발행 가능하나 2001년 이후 발행되지 않고 있다. 양곡증권, 국민주택채권 제2종은 발행이 폐지되어 현재는 채권 잔액에 대한 상환만 이루어지고 있다. 재정증권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고금 출납상 필요한 때”에 발행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3종은 2005년 6월부터 발행하고 있다. 기존의 국민주택기금채권, 농어촌발전채권, 농지채권은 국고채권으로 흡수되었다.

<표 III-1> 국채의 종류

	부담주체	목 적
재정증권	각 회계, 국고여유자금 조정계정	국고금 출납
국고채권	공자기금	재정자금 조달
국민주택채권 (1종, 3종)	국민주택기금	주택건설
외평기금채권	외평기금	외환수급 조절
공공용지보상채권	교통시설특별회계	용지보상비
출자재정증권	일반회계(재정부)	국채기구 출자

자료: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 대한민국정부

2) 차입금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민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국내차입금과 IBRD, ADB 등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 등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차입받는 해외차입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유가증권의 발행으로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채와 구별되는 국고채원 조달수단이다.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차관은 정부가 외국정부·경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 법인(지방자치단체 포함)이 외국정부나 경제협력기구로부터 공공차관 협약에 의하여 도입한 차관을 말한다. 공공차관은 정부가 직접 차주가 되어 도입하는 재정차관과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지자체 등이 도입하는 보증차관으로 구분되는데 해외차입금은 공공차관 중 정부가 직접 차주가 되어 도입하는 재정차관을 의미한다. 공공차관 중 보증차관은 보증채무로 분류된다. 재정차관은 정부가 차관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전대하는 전대차관과 전대하지 않은 비전대차관으로 나눌 수 있다.

3)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예산의 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로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 받은 것으로 채무부담과 관련한 실제 지출에 대해서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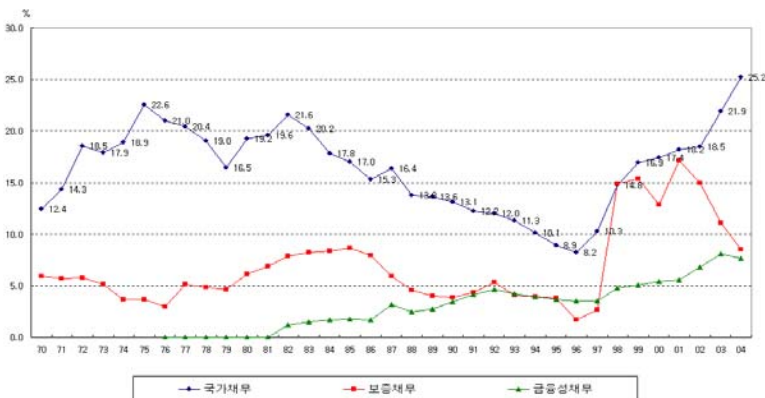
2. 국가부채 추이

가. 전체적인 추이

국가채무의 경우 GDP 대비 비중이 1970년 12.4%에서 1975년 22.5%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가 경제위기가 발생하며 1980년대 초에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1983년부터 재정안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1996년 8.8%까지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하락추세는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하며 반전하여 국가채무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외환위기가 진정된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용 재원조달, 공적자금 국채전환 및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으로 국가채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970년 이후 정부의 지급보증채권은 GDP 대비 5% 수준에서 등락이 있었으나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한 대규모 지급보증 채권을 발행함에 따라 GDP 대비 15%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보증채권을 국

[그림 III-1] 국가부채의 추이



주: 금융성 채무에는 국민주택기금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만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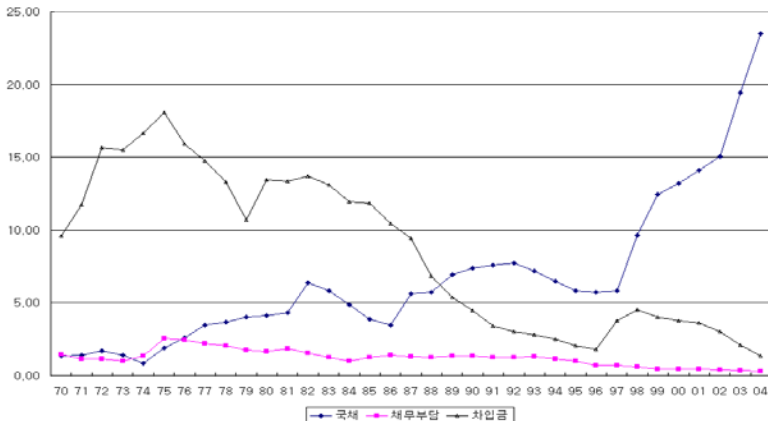
채로 전환함에 따라 보증채무의 비중은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정부지급보증 부분을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2004년 33.7%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주택채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처럼 정부가 자산을 보유한 금융성 채무의 규모는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금융성 채무 및 보증채무 전환을 감안한다면 최근의 채무 증가 정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유형별 추이

국가채무의 규모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자. 먼저 국채의 경우를 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정부 부족재원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이후로는 국채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는 그 비율이 안정되기 시작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의 차입금은 1970년대 초반 GDP의 15%에서 등락을 보일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5년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그림 III-2] 유형별 국가채무의 추이



<표 III-2> 주요 국채(잔액 기준)

(단위: 조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국고채권	-	1.1	3.0	4.9	6.3	18.8	34.2	42.6	50.9	55.6	81.4	123.0
국민주택 채권(1종)	5.1	6.2	7.3	8.5	9.7	10.8	12.6	14.6	17.4	22.5	26.9	29.3
국민주택 채권(2종)	2.3	2.5	2.7	2.9	3.2	3.2	3.2	3.2	3.2	3.2	3.2	3.1
양곡증권	6.2	6.0	4.9	4.9	4.9	4.9	4.9	2.5	2.1	1.1	0.6	-
외평기금 채권	4.5	4.2	4.2	4.2	4.2	3.9	6.2	8.4	8.7	15.8	28.4	27.4
국채 합계	20.8	22.0	23.3	25.7	28.6	41.6	61.2	71.2	82.4	98.3	140.5	182.8

자료: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고과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의 경우에는 차입금의 GDP 대비 비중이 1.37%로 낮아졌다.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정부의 부채는 1970년대 중반까지 거의 국채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낮아져, 2004년의 경우 GDP 대비 0.3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채의 통화별 구성을 살펴보면 1998년 4월에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해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외화표시로 발행된 이외에는 모두 원화표시로 발행되고 있다. 2002년중에 추가로 발행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없다.

<표 III-3> 외화표시 외평채 발행 현황

구 분	발 행 일	만 기 일	발행이자율(%)	발 행 액	비 고
달러화 표시	1998. 3. 30	1999. 3. 30	8.0	107.7백만달러	국내발행
달러화 표시	1998. 4. 17	2003. 4. 17	8.75	10억달러	해외발행
달러화 표시	1998. 4. 17	2008. 4. 30	8.875	30억달러	해외발행
엔화 표시	1998. 4. 30	1999. 4. 30	2.5	2.65백만달러	국내발행

자료: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 대한민국정부

다. 국가부채의 변동 요인

다음으로 국가채무의 변동 요인을 살펴보자. 아래 그림은 국가채무를 유형별 구분하여 유형별 변동 규모를 GDP 대비 비율로 표시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의 경우 재정적자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연스럽게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적자의 원인은 경제개발, 특히 중화학공업의 개발이라는 정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베트남 공산화 등으로 국방비가 크게 증가한 것도 재정적자의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채무의 증가 형태를 보면 1970년대 초반의 채무 증가는 대부분 차입금과 국고채 이외의 채권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72년의 경우에는 제1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재정수지 적자가 커진 연도이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1930억원, GDP 대비 약 4.58%로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채무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를 위하여 2,590억원을 차입함으로써 정부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다만 재정적자의 규모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큰 이유는 재정수지를 계산할 때 전대차관을 제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전대차관은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 지원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974년 및 1975년도는 석유파동으로 재정적자가 큰 시기이며, 이에 따라 정부부채가 증가하였다. 1974년과 1975년의 경우 각각 약 3,010억원과 4,66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GDP 대비 -3.87%, -4.49%에 해당한다. 다만 1974년도의 경우는 1972년도처럼 약 4,500억원의 차입금을 이용하여 재정적자 재원을 조달한 반면 1975년의 경우에는 약 5,810억원의 차입금 이외에 국민투자채권이나 국고채무부담행위의 규모를 약 3,030억원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1975년을 정점으로 10%대에 이르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안정화 추

세를 보이던 GDP 대비 부채비율은 1980년도 들어 증가세로 반전된다. 1980년 -1.5%의 경제성장률을 비롯하여 1980년 전후 정치·경제적 불안정성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며 재정적자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의 경우 약 1.2조원, GDP 대비 3.03%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다. 1981년과 1982년도 각각 약 2.1조원 및 2.2조원, GDP 4.34% 및 3.99%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주로 국채 및 차입금이 동원되었다. 1980년의 경우 국채가 약 3천억원, 차입금이 약 1.8조원 규모로 재정적자 규모를 대폭 상회하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대차관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1981년의 경우에는 차입금 약 1.3조원, 국채 약 5천억원 등으로 재정적자를 충당하고 있으므로 전대차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1982년의 경우 국채 약 1.4조원, 차입금 약 1.1조원으로 재정적자를 충당하고 있어, 국채를 통한 재정적자 보전방식이 본격적으로 시동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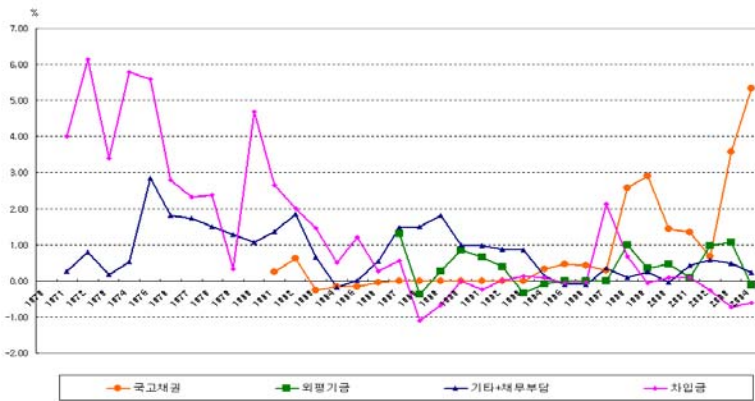
1983년부터는 재정안정화 정책이 동원되면서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까지 GDP 대비 부채비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발생하며 약 7조원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외환보유고 확충 목적으로 IBRD, ADB에서 차입하여 산업은행에 전대한 차관(약 50억달러, 약 7조원)에서 발생한다.¹⁾ 그러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면 여전히 약 6조원의 적자이다. 1998년에는 경제성장률 저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부지출 증대 등으로 통합재정상 약 18.7조원, 사회보장성기금 제외시 약 24.9조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였다.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약 18조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3.3조원을 차입하였다. 1999년에도 외환위기의 후유증으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제외 약 20.4조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약 19조원의 국채 발행 등으로 보전하였다.

2003년과 2004년에도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제외 약 12.0조원, 15.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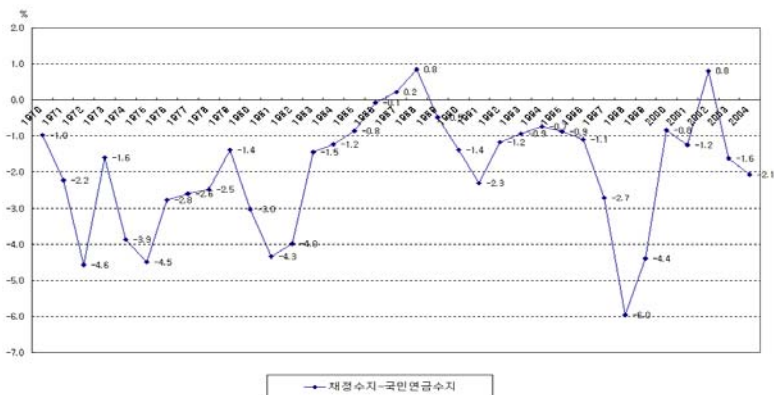
1) 해당 전대차관은 처음에 재정이 아닌 금융 성격으로 보아 재정수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이후 자료에서는 적자로 계상함.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지만 국채의 발행은 각각 약 37.5조원, 약 42.2조원에 이르고, 차입금도 5조원 수준에 이르렀다. 재정적자에 비해 정부부채가 급속히 증가한 이유는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 환평형채권을 발행한 요소도 있지만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보증채권을 국채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III-3] 유형별 국가채무의 변동(GDP 대비 비율)



[그림 III-4] 재정수지



라. 기 타

1) 보증채무

보증채무는 정부가 정부 이외의 채무 상황을 보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채무를 인수하므로 우발(contingency) 채무에 해당한다. 정부의 보증채무는 일반보증, 정부보증, 차관보증으로 구분되는데 현재 일반보증의 대상으로는 농업기반공사, 비료자금 및 대러경협차관이 있다. 그러나 가장 규모가 큰 대러경협차관도 1조원 수준에 불과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도 1999년에는 3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보증 규모가 감소하여 1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차관지불보증도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보증채무의 핵심은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다. 해당 채권으로는 산업금융채권,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과 금융구조조정과 관련된 채권이 있다. 이 중 산업금융채권,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은 그 규모가 미미하며, 또한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부보증채무의 핵심인 금융구조조정채권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없었으나 2001년 말 기준 97조원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002년 말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95조원의 구조조정채권에 대하여 28조원은 회수자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69조원은 정부와 금융권이 분담하기로 하고 2003년부터 상환하고 있다. 정부부담분 49조원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원(현재가치 기준)씩 출연하여²⁾ 상환하는 한편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의 원금을 매년 12조원씩 국채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보증채권의 국채 전환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06년도에는 정부 보증채무의 문제

2) 그러나 2004년의 경우 일반회계의 출연규모는 2천억원이며, 2005년의 경우에도 1.3조원만 출연함으로써 출연의 규모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표 III-4> 정부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10억원)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일반보증채무	1,564	1,548	1,405	1,975	31,298	13,849	2,415	5,828	5,324	1,675
농업기반공사	284	281	275	268	261	254	245	236	227	216
비료자금	570	570	370	370	370	370	370	370	370	370
대러경협차관	710	697	760	1,337	1,103	1,041	1,145	1,205	1,091	1,089
항공기사고보증	-	-	-	-	-	-	-	4,017	3,636	-
대외외화채무	-	-	-	-	29,563	12,184	655	-	-	-
정부보증채권	11,311	13,163	6,038	10,864	40,541	64,363	68,364	97,510	95,430	77,457
원화신금채	11,261	13,063	5,888	3,681	1,940	802	28	15	4	0.8
컨테이너부두개발	50	100	150	200	200	190	170	140	100	60
부실채권정리기금	-	-	-	6,983	17,386	19,871	15,726	15,319	14,351	6,158
예금보험기금	-	-	-	-	21,015	43,500	52,441	82,036	80,974	71,237
차관지불보증	449	317	169	200	114	3,238	3,786	3,431	1,717	1,458
채무보증총액	13,324	15,029	7,612	13,039	71,953	81,055	74,565	106,770	102,471	80,590

주: 1. 한국투신 등 3개 투신회사의 금융기관차입 2,900억이 포함된 수치

2. 외화신금채 2,350억원이 포함된 수치

3. 비료자금에서 비료계정으로 전환

자료: 대한민국정부, 『국가채무에 관한 계산서』, 각 연도

가 거의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01년 106조원에 이르던 보증채무의 규모가 2004년에는 66조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2) 특수채

국가채무와 관련이 있는 채권으로 한국은행, 공사, 은행 등이 발행하는 특수채가 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통안증권이 142.7조원, 예금보험기금채권이 61.1조원, 산업금융채권이 28.7조원으로 특수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전에는 기술개발금융채권, 장기신용채권 등도 있었으나 발행 주체가 민영화되며 특수채에서 제외되었다. 이미 살펴본 금융구조조정채권인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은 발행 주체가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형태이다.

<표 III-5> 주요 특수채(2004년 말 기준)

(단위: 조원)

	잔액	부담 주체	발행 목적
통안증권	142.7	한국은행	통화관리
토지개발채권	4.1	한국토지공사	토지수용자금
산업금융채권	28.7	한국산업은행	산업개발자금
전력채권	3.4	한국전력공사	전력개발자금
예금보험기금채권	61.1	예금보험기금	금융구조조정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4.0	부실채권정리기금	부실채권정리
중소기업금융채권	9.9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지원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각 연도.

특수채의 발행 규모를 보면 1991년 말 27.7조원에서 2004년 말에는 258조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예금보험기금채권, 부실채권정리

<표 III-6> 주요 특수채 발행 현황

(단위: 조원)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중소금융채권	2.9	3.5	4.6	6.1	7.5	8.3	6.6	5.9	5.5	8.0	9.8	9.9
전력채권	1.8	1.6	2.0	3.3	5.4	7.7	9.4	10.4	2.7	2.8	4.2	3.4
토지개발채권	3.4	3.2	3.9	3.8	4.2	8.2	8.3	7.4	5.9	4.7	3.2	4.1
산업금융채권	9.6	11.3	13.1	15.1	18.2	23.1	22.8	24.7	24.4	24.4	25.2	28.7
주택공사채권	0.1	0.1	0.2	0.3	1.0	2.6	2.5	2.2	1.8	1.1	0.4	4.1
기술개발금융채권	0.4	0.6	1.2	1.5	1.9	1.2	-	-	-	-	-	-
장기신용채권	5.8	7.7	9.3	9.0	11.0	9.5	-	-	-	-	-	-
부실채권 정리기금채권	-	-	-	-	7.0	18.6	19.9	15.7	15.3	14.4	6.2	4.0
예금보험기금채권	-	-	-	-	-	21.0	43.5	52.4	82.0	81.0	71.2	61.1
통화안정증권	24.2	25.3	25.8	25.0	23.5	45.7	51.5	66.4	79.1	84.3	105.5	142.8
합 계	48.2	53.4	60.0	64.1	79.7	145.9	164.5	185.2	216.5	225.0	225.7	258.1

주: 1. 산금채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은 외화표시채권 제외, 통화증권은 일
반매출·경쟁매출 모두 포함(외환위기 이후 단기물 발행으로 1998에
규모 급증)

2. 장기신용은행의 장기신용채권은 국민은행으로 통합되며, 기술개발금융
채권은 한국기술개발금융의 정부 출자분 매각으로 '98년 이후 제외

3. 연도별로 수치가 다른 경우가 있음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각 연도

기금채권 및 통안증권의 증가가 특수채 급증의 주요 요인이다. 이 중에서 예금보험기금채권,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은 정부의 공적자금상환 대책에 따라 축소될 전망이다. 산업금융채권도 최근에는 별다른 규모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안증권은 통화조절의 목적으로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3)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

정부투자 및 출자기관의 부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공기업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파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채무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해당 기업의 부채가 증가할 경우 정부가 출연 또는 출자를 하는 경우도 많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의 부채에 대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부담을 공유할 개연성이 있다.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1997년에는 18개에 이르렀으나 2005년에는 14개로 감소하였다. 반면 정부출자기관은 1997년 9개에서 2005년에는 18개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료를 보면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한국가스공사 등 상업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이 출자기관으로 전환되었다.³⁾

3) 한국전력공사는 2002년 투자기관에서 출자기관으로 전환되었으나, 2002년 12월 한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다시 투자기관으로 전환되었다. 즉, 정부지분이 50% 이상이면 정부투자기관이고, 50% 미만이면 정부출자기관으로 구분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정부지분 약 35%와 2002년 12월 법개정으로 한국산업은행의 지분 약 20%도 정부지분으로 포함되어 50% 이상의 지분을 정부가 소유하게 됨에 따라 다시 투자기관으로 분류된다.

<표 III-7> 정부투자/출자기관 변동 상황

1997. 2	2005. 9
정부투자기관(18)	정부투자기관(14)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통신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공업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KOTRA,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조폐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KOTRA
정부출자기관(9)	정부출자기관(18)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감정원 서울신문사, 한국방송공사 포항종합제철,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한국수출입은행, 서울신문 한국방송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자료: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2005 3/4분기.

공기업이었던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포항제철,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등이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이었으며, 대규모 부채를 지고 있었지만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의 부담은 없었고, 반대로 지분매각에 따른 정부수입의 규모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공기업의 부채가 정부의 부담으로 귀속될지, 아니면 이득으로 나타날지는 불분명하다.

정부투자기관의 부채를 보면 1995년 134.5조원에서 2004년 72.2조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의 부채 증감은 어떤 공기업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1997년에 한국통신이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산과 부채가 70조원 이상 감소하였다. 상업성이 높은 한국전력의 지분을 매각하여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하면 2004년 말 기준 약 18조원에 달하는 부채가 제외되므로 정부투자기관의 대규모 부채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한국전력공사를 제외

<표 III-8> 정부투자기관 현황

(단위: 개, 조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기관수	13	13	13	13	13	13	13
자 산	108.3	130.2	138.0	128.9	135.9	143.2	156.6
부 채	69.0	74.2	75.9	62.7	63.5	65.2	72.1
자 본	39.4	56.1	62.1	66.2	72.3	78.0	84.4
수 익	26.4	29.9	34.0	36.8	41.4	41.3	44.4
비 용	24.6	27.2	32.2	35.1	37.5	38.0	40.4
순이익	1.8	2.7	2.8	2.8	3.9	3.2	4.0

자료: 재정경제부, 『2004회계연도 정부투자기관 결산서』

하면 정부투자기관은 순이익이 작아 시장성에 문제가 있으며, 자본금 증액을 위한 정부의 출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3. 광의의 국가부채⁴⁾

앞에서는 IMF 기준에 의한 국가부채의 규모와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제II장에서 언급했듯이 국가부채의 실상을 좀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증채무, 사회보장기금의 잠재채무, 공공기업의 채무 및 일부 민간관리기금 부채를 포함한 보다 광의의 국가부채를 동시에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다음에서 GDP 대비 국채발행 잔액비율의 추이는 1973년부터 2004년까지 살펴보면, 2000년, 2004년에는 국가보증채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1980, 1990, 2000, 2004년에는 기금과 정부투자기관의 부채도 고려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관리기금의 부채를 포함하여 국가채무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는 저장(stock)변수인 해당 기관의 부채자료뿐이므로 이하의 분석은 해당 기관의 재산상태를 보여주는 표와 자료를 찾아 이 중에서 부채 항목자료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4) 이창용, 성태윤, 이영(2006)의 미출간된 보고서에서 인용

가. 분석에 포함된 정부투자기관 및 기금

1) 정부투자기관⁵⁾

우선 1971년부터 2004년까지 명멸하였던 모든 정부투자기관 중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등 4개의 국가소유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든 정부투자기관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기간별 분석대상 정부투자기관은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I-9> 분석에 포함된 정부투자기관

기관수	1980년 21	1990년 21	2000년 13	2004년 13
기관명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업기반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종합화학(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종합화학(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산업기지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국정교과서(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해외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방송공사	근로복지공사		
	농업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농어촌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교과서(주)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해외개발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근로복지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포항종합제철(주)	한국조폐공사		
	대한건설공사	한국방송공사		

- 5) 한국석유개발공사에서 1999년 한국석유공사로 명칭 변경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1996년 한국토지공사로 명칭 변경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2001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명칭 변경
 농지개발조합·농지개발조합연합회·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합하여 2000년
 농업기반공사가 설립되었음
 농어촌개발공사에서 1987년 농수산물 유통공사로 명칭 변경

2) 기금⁶⁾

정부재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생겨난 기금은 1969년에 9개에 불과하였으나, 그 이후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기금을 설치한 결과 1992년에는 79개(정부관리기금 37개, 민간관리기금 42개)로 늘어났다가 이후 기금 통폐합을 거쳐 기금의 수는 줄어들었다. 2004년의 경우 민간관리기금의 수는 10개이다⁷⁾.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분석기간 동안에 명멸하였던 모든 기금의 부채를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자료가 미비된 기관이 많아 전체 기금의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재정수지의 계산에서 제외되고 있는 민간관리기금에 포함되는 기금 중에서 자료가 가용한 기관과 자료 요청에 응하여 준 기관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민간관리기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만으로도 전체 기금의 움직임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000년, 2004년 자료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의 부채는 뒤의 [그림 III-5]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보증채가 이미 고려되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2004년의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은 국채발행잔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해 제외되었다.

6) 2002년 3월 기금관리법 개정으로 공공기금과 민간관리기금의 구분이 없어졌으나 분석 기간을 고려하여 민간관리기금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7) 각주 2에서 언급된 것처럼 2002년 3월 기금관리법의 개정으로 공공기금과 민간관리기금의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통합재정 산출시 제외되는 10개의 기타기금을 의미한다.

<표 III-10> 분석에 포함된 민간관리기금

	1980년	1990년	2000년	2004년
기금수	6	10	9	7
기금명	사립학교교원연금 신용보증 농림수산업신용보증 문예진흥 수출보험 과학재단	석유사업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신용보증 농림수산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 중소기업공제사업 문예진흥 수출보험 과학재단	기술신용보증 농림수산업신용보증 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 산업기반신용보증 국민체육진흥 문예진흥 중소기업공제사업 수출보험	기술신용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농어기목돈마련저축장려 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 수출보험 산업기반신용보증

나.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투자기관 및 기금

1) 정부투자기관

<표 III-11>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투자기관

	1980년	1990년	2000년	2004년
기관수	2	1	0	0
기관명	한국수산개발공사 ⁸⁾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증권거래소 ⁹⁾		

8) 1980년에 없어짐.

9)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증권거래소는 '정부투자기관결산검사보고'에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음.

2) 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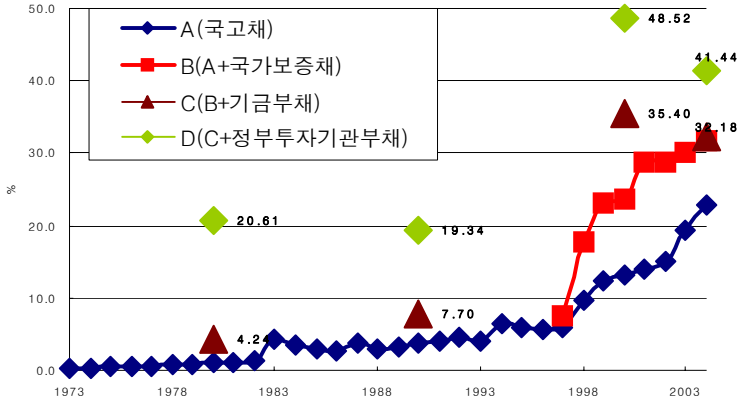
<표 III-12>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관리기금

기금수	1980년 10	1990년 32	2000년 7	2004년 0
기금명	석유사업 중소기업진흥 해외자원개발 등	축산진흥 중소기업진흥 등	농어가목돈미련 저축장려 재산형성저축장려 국제교류 법률구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새마을금고안전 우체국보험	

다. 추정 결과

[그림 III-5]는 각 부채 항목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경우에 채무가 GDP 대비로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1980년에는 GDP 대비 국고채 비율이 0.95%이지만 조사대상 기금부채 추가시 4.24%, 정부투자기관부채까지 추가할 경우 20.61%로 증가하고 1990년에는 각각 3.68%, 7.70%, 19.34%가 된다. 2000년에는 GDP 대비 국고채 비율이 13.19%이지만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보증채 발행잔액을 고려할 경우 23.66%가 되고 이에 기금과 정부투자기관부채를 추가할 경우 각각 35.40%, 48.52%까지 수치가 올라가게 된다. 2004년의 경우는 각각 22.96%, 31.69%, 32.18%, 41.44%로 GDP 대비 국고채 비율은 증가하나 GDP 대비 국가보증채, 민간관리기금부채, 정부투자기관부채의 비율은 2000년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2004년에도 국고채발행잔액만을 고려한 경우에 비해 GDP 대비 채무비율은 여전히 약 2배(22.96→41.44%)나 증가하게 된다.

[그림 III-5] GDP 대비 광의의 국가부채 추이



4. 향후 국가부채 증가 전망

이 절에서는 2070년까지의 우리나라 통합재정(중앙정부 기준)을 전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 증가할지를 추계해 보았다. 물론 정부의 세제개편 및 재정지출 전략에 따라 얼마든지 전망수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장기전망을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우선 본 연구에서 통합재정 수입에 대한 장기전망에서 사용한 전망의 전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세수입은 2005~2009년 기간은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정부 전망치를 이용하고, 2010년 이후는 2009년 국세부담률 수준인 GDP 대비 16.0%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사회보장기여금의 경우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의 보험료 수입은 최준욱·전병목(2003)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를 감안하여 전망한 수치를 이용하였고, 나머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에 대해서는 2005년 예산 수준인 GDP 대비 0.8%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세 번째 수입항목인 세외수입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의 자산운용수입은 최준욱·전병목(2003)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를 감안하여 전망한 수치를 이용하였고, 나머지 세외수입 항목에 대해서는 2005년 예산 수준인 GDP 대비 3.5%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본수입은 2005년 예산 수준인 GDP 대비 0.16%를 유지하는 것으로, 비금융공기업 수입도 2005년 예산 수준인 GDP 대비 0.17%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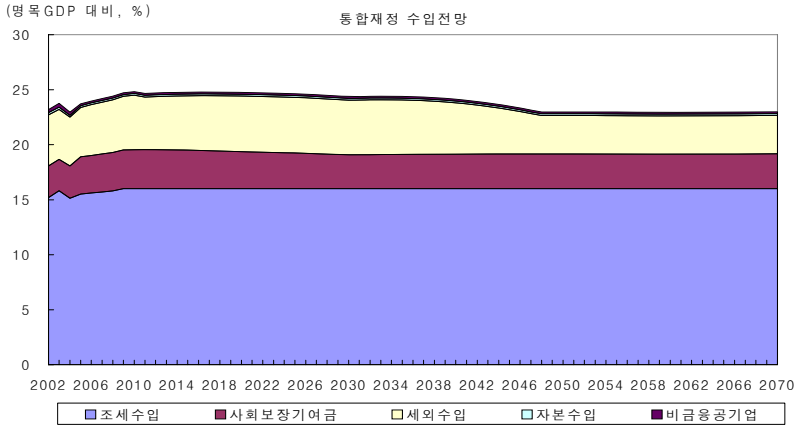
<표 III-13> 및 [그림 III-6]에 정리된 2070년까지의 통합재정수입 전망 결과를 보면, 2005년 현재 GDP 대비 23.72%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통합재정 수입규모가 2035년 24.39%까지 상승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어 2070년에는 22.99%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최근 증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이 2020년까지 지속되다가 이후 소폭 감소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는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등의 적립금 규모의 증가로 세외수입이 증가하지만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표 III-13> 2070년까지의 통합재정수입 전망 결과

(단위: 명목GDP 대비, %)

	2005	2020	2035	2050	2060	2070
조세수입	15.51	16.00	16.00	16.00	16.00	16.00
사회보장기여금	3.39	3.38	3.12	3.18	3.13	3.18
세외수입	4.49	5.06	4.95	3.48	3.48	3.48
자본수입	0.16	0.16	0.16	0.16	0.16	0.16
비금융공기업	0.17	0.17	0.17	0.17	0.17	0.17
총 수 입	23.72	24.76	24.39	22.99	22.95	22.99

[그림 III-6] 2070년까지의 통합재정수입 전망 결과



다음으로 통합재정 지출전망에 이용한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가정들을 살펴보자.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출은 2003년 결산 수준인 GDP 대비 1.4%를 유지하는 것으로, ‘국방’ 분야 지출은 “국방개혁 2030”에 의한 국방 조기투자 등을 감안하여 2003년 결산기준 2.5%에서 2010년 3.0%까지 상승 후 동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지출은 2003년 결산 수준인 GDP 대비 1.1%를 유지하는 것으로, ‘교육’ 분야 지출은 최준욱·전병목(2003)에서 교육단계별 학생 수와 1인당 교육비 등을 기초로 전망한 수치를 이용하였다. ‘보건’ 분야 지출은 2014년까지는 2003년 결산 수준인 GDP 대비 0.1%보다 다소 높은 0.2%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2030년 및 2031년 이후는 각각 KDI(2004) 및 최준욱·전병목(2003)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를 감안하여 전망한 수치를 이용하였다.

한편,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 지출은 2030년까지는 KDI(2004)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를 감안하여 항목별 복지지출 수준을 전망한 수치의 합계를, 2031년 이후는

최준욱·전병목(2003)의 전망치 추이를 이용하여 KDI(2004)의 항목별 전망치를 연장하여 이용하였다.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 개발’ 분야 지출은 2003년 결산 수준인 GDP 대비 1.1%를 유지하는 것으로, ‘오락·문화·종교’ 분야 지출은 2003년 결산 수준인 GDP 대비 0.3%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기타’ 분야 지출은 49조원의 공적자금 손실분 국채전환, 이자지급, 비금융공기업 지출 등이 포함되는데,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전망하였다. 공적자금 손실분 국채전환은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라 2003년 13조원, 2004~2006년까지 매년 12조원씩으로 계산하였으며, 이자지급 규모는 각 연도별 국가채무 수준에 국채금리를 경상성장률보다 0.5%포인트 낮은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하였고, 비금융공기업 지출 등은 2005년 예산 수준인 GDP 대비 1.0%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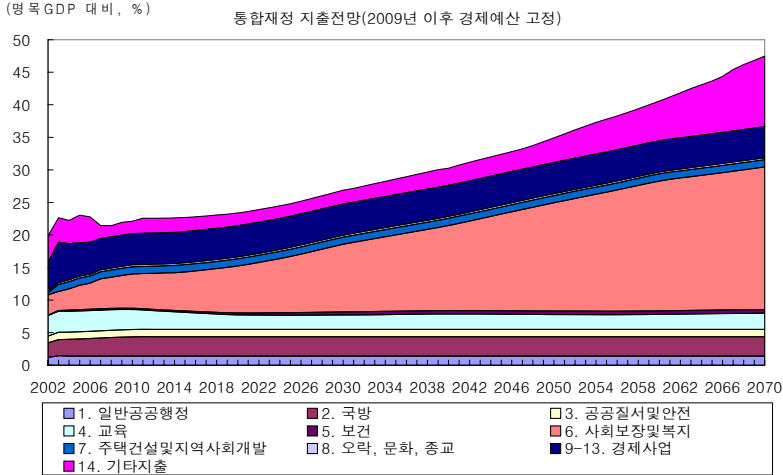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경제사업’ 분야 지출은 2008년까지는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2003년 6.2%에서 2008년 4.8%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2009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시나리오 1은 2009년 이후 2008년 수준인 GDP 대비 4.8%를 유지하는 것으로, 시나리오 2에서는 2009~2020년 중 복지예산 증가분만큼 경제예산을 축소하고 2021년부터는 2020년 수준인 GDP 대비 2.4%를 유지하는 것으로, 시나리오 3에서는 2009~2030년 중 복지예산 증가분의 1/2만큼만 경제예산을 축소하고 2031년부터는 2020년 수준인 GDP 대비 3.1%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III-14> 2070년까지의 통합재정지출 전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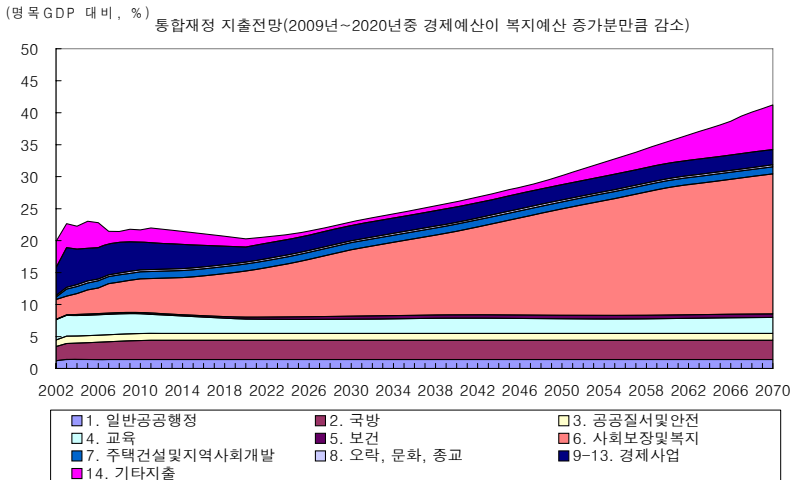
(단위: 명목GDP 대비, %)

	2005	2020	2035	2050	2060	2070
시나리오 1 : 2009년 이후 경제=일정						
1. 일반공공행정	1.40	1.40	1.40	1.40	1.40	1.40
2. 국방	2.64	2.99	2.99	2.99	2.99	2.99
3. 공공질서및안전	1.10	1.10	1.10	1.10	1.10	1.10
4. 교육	3.19	2.22	2.30	2.30	2.32	2.51
5. 보건	0.20	0.30	0.51	0.55	0.55	0.55
6. 사회보장및복지	3.75	7.20	11.72	16.63	19.95	21.89
7. 주택건설및지역사회개발	1.10	1.10	1.10	1.10	1.10	1.10
8. 오락, 문화, 종교	0.30	0.30	0.30	0.30	0.30	0.30
9-13. 경제사업	5.12	4.79	4.79	4.79	4.79	4.79
14. 기타지출	4.24	1.95	2.40	3.79	6.13	10.84
총 지출	23.05	23.35	28.60	34.96	40.63	47.48
시나리오 2 : 2009년 이후 경제+사회복지=일정						
1. 일반공공행정	1.40	1.40	1.40	1.40	1.40	1.40
2. 국방	2.64	2.99	2.99	2.99	2.99	2.99
3. 공공질서및안전	1.10	1.10	1.10	1.10	1.10	1.10
4. 교육	3.19	2.22	2.30	2.30	2.32	2.51
5. 보건	0.20	0.30	0.51	0.55	0.55	0.55
6. 사회보장및복지	3.75	7.20	11.72	16.63	19.95	21.89
7. 주택건설및지역사회개발	1.10	1.10	1.10	1.10	1.10	1.10
8. 오락, 문화, 종교	0.30	0.30	0.30	0.30	0.30	0.30
9-13. 경제사업	5.12	2.40	2.40	2.40	2.40	2.40
14. 기타지출	4.24	1.26	0.68	1.42	3.41	6.99
총 지출	23.05	20.27	24.49	30.19	35.52	41.24
시나리오 3 : 중간 시나리오						
1. 일반공공행정	1.40	1.40	1.40	1.40	1.40	1.40
2. 국방	2.64	2.99	2.99	2.99	2.99	2.99
3. 공공질서및안전	1.10	1.10	1.10	1.10	1.10	1.10
4. 교육	3.19	2.22	2.30	2.30	2.32	2.51
5. 보건	0.20	0.30	0.51	0.55	0.55	0.55
6. 사회보장및복지	3.75	7.20	11.72	16.63	19.95	21.89
7. 주택건설및지역사회개발	1.10	1.10	1.10	1.10	1.10	1.10
8. 오락, 문화, 종교	0.30	0.30	0.30	0.30	0.30	0.30
9-13. 경제사업	5.12	3.60	3.60	3.60	3.60	3.60
14. 기타지출	4.24	1.61	1.54	2.61	4.77	8.92
총 지출	23.05	21.81	26.55	32.57	38.07	44.36

[그림 III-7] 2070년까지의 통합재정지출 전망 결과
(시나리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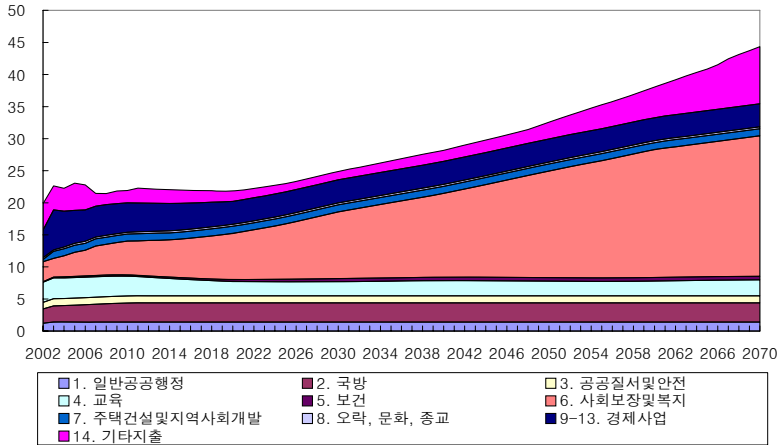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명목 GDP 대비, %)

통합재정 지출전망(2009년~2030년중 경제예산이 복지에산 증가분 1/2만큼 감소)



이상과 같은 통합재정 수입 및 지출 전망을 이용하여 통합재정수지,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을 제외시킨 관리대상 재정수지에 대한 장기 전망치를 추계한 결과가 <표 III-15> 및 [그림 III-8]에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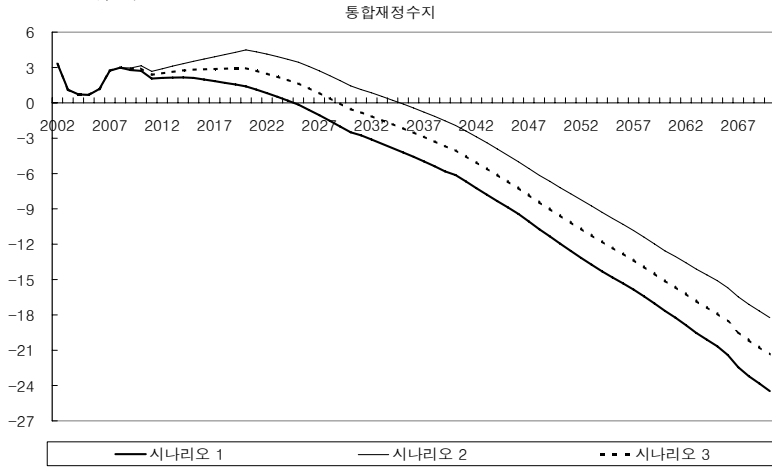
<표 III-15> 2070년까지의 통합재정수지 전망 결과

(단위 : 명목GDP 대비, %)

	2005	2020	2035	2050	2060	2070
통합재정수지						
시나리오 1	0.67	1.41	-4.21	-11.96	-17.68	-24.49
시나리오 2	0.67	4.49	-0.10	-7.20	-12.57	-18.24
시나리오 3	0.67	2.95	-2.16	-9.58	-15.12	-21.36
관리대상재정수지						
시나리오 1	-0.72	-0.92	-4.37	-6.72	-10.07	-15.45
시나리오 2	-0.72	2.16	-0.26	-1.96	-4.96	-9.20
시나리오 3	-0.72	0.62	-2.32	-4.34	-7.51	-1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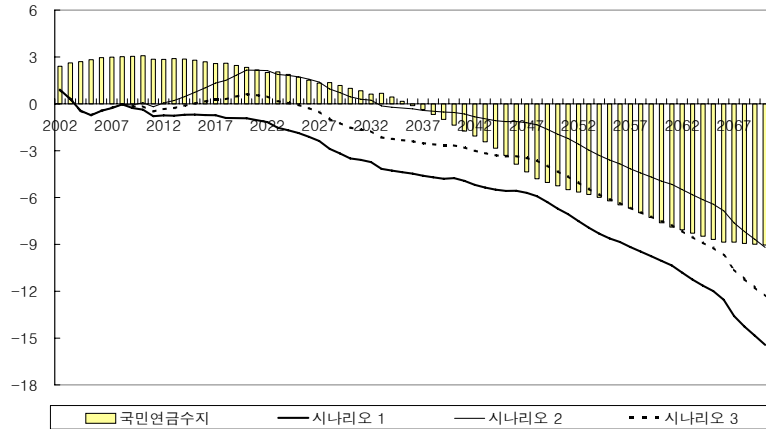
[그림 III-8] 2070년까지의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대상 재정수지
전망 결과

(명목 GDP 대비, %)



(명목 GDP 대비, %)

관리대상 재정수지(국민연금 및 공적자금 원금상환 제외)



최종적으로 2070년까지의 중앙정부 채무 전망 결과를 살펴보자. 중앙정부 채무 전망에 있어서는 지방정부 채무가 2000년 말 22.3조원에 서 2004년 말 18.2조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지방정부 채무의 50% 이상을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앙정부 채무는 2009년까지는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치를 이용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매년 중앙정부 채무 항목별로 계산하였다.

적자국채는 연도별 관리대상 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수지 및 공적자금 손실분 국채전환분을 제외한 수지)의 적자 규모만큼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며, 외국환평형채 및 국민주택채는 2009년 말 전망치인 109조원 및 37조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공적자금상환 관련 채무는 2027년까지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2002년 말 발표)에 따라 2003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매년 2조원씩 일반회계에서 상환할 경우의 49조원의 공적자금 손실분 상환과 관련된 이자와 관련된 채무를 계산하였다.¹⁰⁾

국민연금 관련 채무는 현재의 국민연금 수급구조하에서는 2047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전망이므로 이 때부터는 국민연금채를 발행하여 국민연금을 지급한다고 가정하여 동 원리금을 매년 계산하여 중앙정부채무에 반영하였다. 최준욱·전병목(2003)의 전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고, 2036년부터는 자산운용수입을 포함한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커져 연금 자산 규모가 감소하여 2047년중에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10) 49조원의 공적자금 손실분 상환과 관련된 원금 채무는 2003~2006년 중에 모두 중앙정부 채무인 국채로 전환될 예정으로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되었다.

<표 III-16> 2070년까지의 중앙정부 부채 전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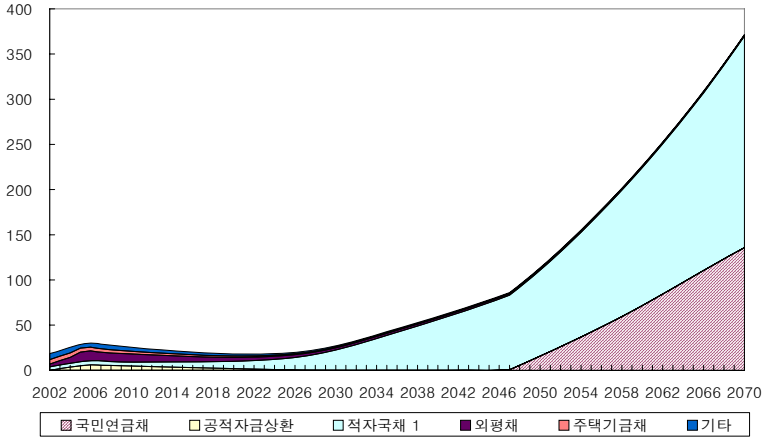
(단위: 명목GDP 대비, %)

	2005	2020	2035	2050	2060	2070
시나리오 1						
국민연금채	0.0	0.0	0.0	15.9	71.9	136.1
공적자금상환	5.0	2.0	0.0	0.0	0.0	0.0
적자국채	4.5	8.0	38.7	95.0	152.7	234.1
외평채	10.7	4.5	2.2	1.5	1.2	0.9
주택기금채	4.4	1.5	0.7	0.5	0.4	0.3
기타	4.2	2.2	1.1	0.7	0.6	0.4
중앙정부채무 합계	28.8	18.1	42.7	113.7	226.7	371.9
시나리오 2						
국민연금채	0.0	0.0	0.0	15.9	71.9	136.1
공적자금상환	5.0	2.0	0.0	0.0	0.0	0.0
적자국채	4.5	-6.1	-12.5	4.1	36.7	92.0
외평채	10.7	4.5	2.2	1.5	1.2	0.9
주택기금채	4.4	1.5	0.7	0.5	0.4	0.3
기타	4.2	2.2	1.1	0.7	0.6	0.4
중앙정부채무 합계	28.8	4.0	-8.5	22.7	110.8	229.8
시나리오 3						
국민연금채	0.0	0.0	0.0	15.9	71.9	136.1
공적자금상환	5.0	2.0	0.0	0.0	0.0	0.0
적자국채	4.5	0.9	13.1	49.5	94.7	163.1
외평채	10.7	4.5	2.2	1.5	1.2	0.9
주택기금채	4.4	1.5	0.7	0.5	0.4	0.3
기타	4.2	2.2	1.1	0.7	0.6	0.4
중앙정부채무 합계	28.8	11.1	17.1	68.2	168.7	300.8

[그림 III-9] 2070년까지의 중앙정부 부채 전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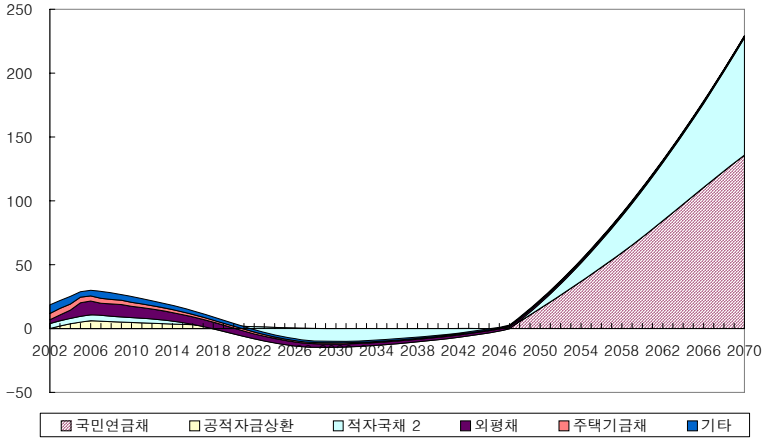
(명목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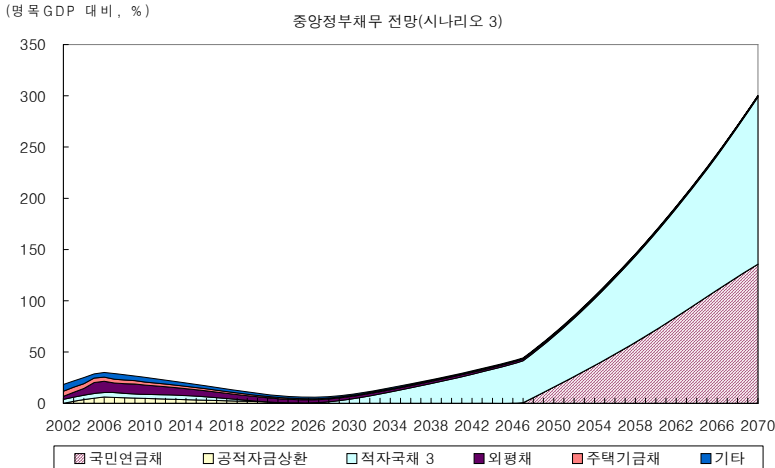
중앙정부채무 전망(시나리오 1)



(명목 GDP 대비, %)

중앙정부채무 전망(시나리오 2)





이상과 같은 장기재정 전망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경제지출 감축 노력 정도에 따라 시작 시기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고령화와 관련된 일반재정 지출 및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등으로 GDP 대비 중앙정부채무 비율이 급속히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¹¹⁾

경제지출 비중 4.8%를 2009년 이후 그대로 유지하는 시나리오 1에 따르면 관리대상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국민연금도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GDP 대비 중앙정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2020년까지 경제지출 규모를 사회복지지출 증가분만큼 삭감하고 이후에도 GDP 대비 2.4%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강도 높은 지출통제 정책을 실시하는 시나리오 2에 따르면 2012~2032년 기간중에 관리대상 재정수지가 일시 흑자를 보여 국민연금 적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중앙정부채무 비율이 2051년에야 2005년 수준

11) 정부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09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지출 구조를 조정하여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늘리는 반면 경제예산의 비중을 축소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동 계획에 따르면 2009년까지 사회복지예산이 GDP 대비 5.0%(2005년 3.8%)로 증가하고, 경제예산은 4.8%(2005년 5.1%)로 감소하게 된다.

(28.8%)을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30년까지 경제지출 규모를 사회복지지출 증가분의 1/2만큼 삭감하고 이후에도 GDP 대비 3.1% 수준을 유지하는 지출통제 정책을 실시하는 시나리오 3에 따르면 GDP 대비 중앙정부채무 비율이 감소하다가 202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여 2041년에 2005년 수준(28.8%)을 초과하게 될 것이다.

IV. 외국의 국가부채 추이

1. 외국의 국가부채 추이

OECD에서 발표한 30개 회원국들의 1988년 이후 국가부채의 GDP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국가부채 비율은 일본이 가장 높은 156.3%였으며, 룩셈부르크가 가장 낮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1988년 57.8%에서 2004년 76.3%로 18.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간별로 구분해 보면 부채비율 증가의 대부분은 1997년 이전(16.7%p)으로 이는 유럽국가들이 1998년부터 발효되었던 유럽통화동맹(EMU) 3단계 수렴기준(재정적자 GDP 대비 3% 및 국가채무 60% 이내 유지)을 준수하기 위해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에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60~70% 정도의 국가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1990년대에 걸친 장기적인 경제불황으로 세입이 감소하고 감세정책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국가부채 비율이 1988년 74.1%에서 2004년 156.3%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1988~2004년 기간중에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OECD 국가는 일본(82.3%p)이었으며, 다음으로는 그리스(46.6%p), 프랑스(35.7%p), 핀란드(33.5%p) 순이었다. 동 기간 중 국가부채 비율이 감소한 OECD 국가는 모두 6개 국가로 감소규모는 아이슬랜드(-77.8%p), 벨기에(-26.9%p), 네덜란드(-22.1%p), 덴마크(-16.6%p) 순이었다.

다음으로 아시아 주요 개도국인 싱가포르, 대만, 중국 정부에서 발

표한 중앙정부 국가부채비율을 살펴보자. 싱가포르는 1996년 국가채무 비율이 102.5%였으나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여 2003년에는 183.6%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 재정은 2001, 2003, 2004 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항상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렇게 국가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를 아시아 자금조달창구(debt center)로 개발하기 위해 자국 채권시장에 재정흑자하에서도 국채를 발행하여 공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러한 국채발행을 통해 발생하는 재정잉여금을 국채기금에 편입시켜 금융자산에 재투자하고 있다. 반면, 대만의 국가부채비율은 2004년 현재 33.28%에 불과하고, 중국도 2003년 기준으로 5.28%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OECD국가의 국가부채 추이(OECD 기준)

(단위: GDP 대비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88-97	97-04	88-04
호주	25.9	23.8	22.6	23.8	28.2	31.6	41.4	43.4	40.4	38.7	33.3	27.9	24.3	21.5	20.1	18.9	17.8	12.8	-20.8	-8.0
오스트리아	59.1	58.1	57.6	57.6	57.3	62.0	65.1	69.6	69.7	67.3	67.5	69.8	69.5	70.2	71.7	69.4	69.0	8.2	1.6	9.9
벨기에	125.6	122.3	126.2	127.8	136.9	140.7	137.7	135.2	133.5	127.7	122.6	119.1	113.4	111.6	108.1	103.2	98.7	2.1	-29.0	-26.9
캐나다	70.9	72.0	74.5	82.1	89.9	96.9	98.2	100.8	100.3	96.2	93.9	91.2	82.7	82.9	80.5	75.7	72.2	25.4	-24.1	1.3
체코	-	-	-	-	-	-	-	19.3	18.2	17.5	18.9	25.5	26.6	36.9	38.4	46.8	44.6		27.1	
덴마크	69.5	67.8	68.5	69.4	73.4	87.7	81.4	77.6	73.9	69.8	66.6	60.8	53.7	53.3	54.1	55.5	52.8	0.3	-16.9	-16.6
핀란드	19.0	16.7	16.5	24.9	44.7	57.8	60.3	65.1	66.0	64.3	60.8	55.5	52.9	50.9	50.4	52.0	52.5	45.3	-11.8	33.5
프랑스	38.9	38.9	38.6	39.7	43.9	51.0	60.2	62.6	66.3	68.4	69.9	66.5	65.2	63.8	66.6	71.7	74.7	29.4	6.3	35.7
독일	42.3	40.9	41.5	37.9	41.0	46.3	46.7	55.8	58.9	60.4	62.2	60.8	59.9	59.3	61.6	64.6	67.9	18.2	7.5	25.7
그리스	62.7	65.7	79.6	82.2	87.8	110.1	107.9	108.7	111.3	108.2	105.8	105.2	114.0	114.4	111.6	108.8	109.3	45.5	1.1	46.6
헝가리	-	-	-	-	-	-	-	-	-	67.9	65.5	66.3	60.1	58.0	57.8	58.1	60.7		-7.2	
아이슬란드	31.1	36.7	36.4	38.6	46.5	53.4	56.0	59.4	56.8	54.1	48.9	44.1	41.5	47.3	43.5	41.4	36.3	23.1	-17.8	5.2
아일랜드	107.1	97.9	93.2	94.6	91.6	94.2	88.7	81.2	72.8	64.0	53.0	48.1	37.9	35.3	32.0	31.1	29.4	-43.1	-34.7	-77.8
이탈리아	-	-	-	-	-	-	-	125.5	131.3	133.3	135.0	129.5	124.9	124.5	123.5	121.4	123.0		-10.3	
일본	74.1	70.8	68.6	64.8	68.6	74.7	79.7	87.0	93.8	100.3	112.1	125.7	134.0	142.3	149.4	154.0	156.3	26.2	56.1	82.3
한국	9.8	8.9	7.8	6.7	6.4	5.6	5.2	5.5	5.9	7.5	13.1	15.6	16.3	17.4	16.6	18.6	19.6	-2.2	12.0	9.8
룩셈부르크	-	-	5.4	4.6	5.5	6.8	6.3	6.7	7.2	6.8	6.3	6.0	5.5	6.7	6.8	6.7	6.6		-0.2	

<표 IV-1>의 계속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88-97	97-04	88-04
네덜란드	84.4	85.0	84.2	85.3	89.0	93.7	83.9	87.0	86.0	81.0	79.5	71.1	63.7	59.5	60.3	61.9	62.3	-3.4	-18.7	-22.1
뉴질랜드	-	-	-	-	-	64.8	57.8	51.7	45.2	42.6	42.7	39.9	37.9	35.7	34.0	32.0	29.0	-	-13.6	-
노르웨이	32.8	32.8	29.3	27.5	32.2	40.5	36.9	40.5	35.9	32.0	31.3	30.9	34.3	33.2	40.1	50.4	51.2	-0.9	19.2	18.3
폴란드	-	-	-	-	-	-	-	-	-	-	44.4	47.6	43.6	38.3	52.0	52.1	50.2	-	-	-
포르투갈	-	-	-	-	-	-	-	69.9	69.2	65.3	61.6	60.2	59.9	62.5	65.1	66.6	69.5	-	4.1	-
슬로바키아	-	-	-	-	-	-	-	-	-	-	41.2	52.0	58.9	58.8	51.5	49.7	53.0	-	-	-
스페인	-	-	47.7	49.6	51.9	65.4	64.0	68.8	75.6	74.5	74.4	68.5	65.9	61.6	59.7	54.8	52.0	-	-22.5	-
스웨덴	56.1	51.0	46.8	55.5	74.0	79.0	83.5	82.2	84.7	82.9	81.7	71.8	64.4	63.4	60.3	59.8	62.5	26.8	-20.4	6.4
영국	42.8	36.9	33.0	33.6	39.8	49.6	47.8	52.7	52.5	53.2	53.7	48.7	45.7	41.1	41.3	41.9	44.2	10.4	-9.0	1.3
미국	64.8	65.1	66.6	71.3	73.7	75.4	74.6	74.2	73.4	70.9	67.7	64.1	58.1	58.0	60.3	63.4	64.0	6.1	-6.9	-0.8
유로지역	50.3	49.4	49.6	49.0	52.9	59.9	61.7	76.1	80.1	81.2	81.9	78.4	76.1	74.8	75.6	76.6	78.1	30.9	-3.1	27.8
OECD 평균	57.8	56.8	56.9	58.4	62.0	66.6	67.6	72.8	74.5	74.5	74.5	73.3	70.8	71.1	73.2	75.3	76.3	16.7	1.8	18.5

주: 총채무는 부채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와 처리법이 국가마다 달라 국가간 비교가 어려울 수 있음. 특히 OECD 몇몇 국가(호주와 미국포함)에서 공무원 연금보험(employee pension) 부채의 적립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연금의 비적립 부채 비중이 크지만 ESA95/SNA93에 따라 채무에 포함하지 않고 memorandum에 포함시킨 다른 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채정되었음. 일반정부부채가 여기서는 ESA95/SNA93에 따라 정의되었으나, 일부 국가(오스트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적용된 채무 정의에 따름. 자세한 내용은 OECD Economic Outlook Sources and Methods (<http://www.oecd.org/eco/sources-and-methods>) 참조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78 database

<표 IV-2> 아시아 주요 개도국의 국가부채 수준(OECD 기준)

	싱가포르		대만		중국	
	국가채무잔액	국가채무비율	국가채무잔액	국가채무비율	국가채무잔액	국가채무비율
	백만 싱가포르달러	%	십억 신대만달러	%	억 위안	%
1984	28,077.3	149.2				
1985	32,164.4	181.3			89.85	1.00
1986	33,793.1	187.7			138.25	1.36
1987	38,274.3	186.1			223.55	1.87
1988	41,830.7	164.5			270.78	1.81
1989	46,209.7	153.4			407.97	2.41
1990	51,425.6	139.6			375.45	2.02
1991	59,041.1	136.8			461.40	2.13
1992	67,252.5	135.3			669.68	2.51
1993	69,822.0	120.1			739.22	2.14
1994	75,344.4	106.6			1,175.25	2.52
1995	86,507.6	102.6	1,100.74	16.35	1,549.76	2.70
1996	94,830.7	102.5	1,223.89	16.69	1,967.28	2.94
1997	102,371.9	106.8	1,381.31	17.32	2,476.82	3.39
1998	115,183.3	139.8	1,380.99	15.97	3,310.93	4.30
1999	125,777.1	152.2	1,331.69	14.62	3,715.03	4.61
2000	134,370.4	144.9	2,474.29	25.74	4,180.10	4.74
2001	148,999.9	174.1	2,788.17	29.51	4,604.00	4.81
2002	156,751.3	177.8	2,878.32	29.57	5,679.00	5.46
2003	169,331.9	183.6	3,159.04	32.09	6,153.53	5.28
2004	186,598.2	173.2	3,396.47	33.28		

2. 외국의 국가부채 증가의 원인

가. EU국가

1990년대 초 대부분의 EU국가들은 대규모의 재정적자에 시달렸는데, 재정적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기준치를 상회하였고 부채는 약간 하회하였다. 1991년 EU 15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 가중

General government budgetary position in EU countries and the euro area

(as a percentage of GDP)

	Deficit(-)/Surplus(+)				Primary Deficit(-)/Surplus(+)				Government debt			
	1991	1995	1997	2002	1991	1995	1997	2002	1991	1995	1997	2002
Belgium	-7.5	-4.3	-2.0	0.1	3.9	4.9	6.0	6.1	130.9	134.0	124.8	105.3
Denmark	-2.4	-2.3	0.4	2.0	4.9	4.1	6.1	5.6	62.5	69.3	61.2	45.2
Germany	-2.9	-3.5	-2.7	-3.6	-0.1	0.2	0.9	-0.4	40.4	57.0	61.0	60.8
Greece	-11.4	-10.2	-4.0	-1.2	-2.1	1.0	4.2	4.3	82.2	108.7	108.2	104.9
Spain	-4.3	-6.6	-3.2	-0.1	-0.6	-1.4	1.6	2.8	44.3	63.9	66.6	54.0
France	-2.4	-5.5	-3.0	-3.2	0.6	-1.8	0.7	-0.1	35.8	54.6	59.3	59.5
Ireland	-2.9	-2.1	1.4	-0.2	4.8	3.3	5.3	1.1	102.9	82.7	65.0	33.3
Italy	-11.7	-7.6	-2.7	-2.3	0.2	3.9	6.7	3.4	100.6	123.2	120.2	106.7
Luxembourg	1.2	2.1	3.2	2.5	1.5	2.5	3.6	2.9	3.8	5.6	6.1	5.7
Netherlands	-2.7	-4.2	-1.1	-1.1	3.4	1.7	4.1	2.1	76.9	77.2	69.9	52.6
Austria	-3.0	-5.3	-2.0	-0.6	1.2	-0.9	2.0	3.0	57.5	69.2	64.7	67.6
Portugal	-7.6	-5.5	-3.6	-2.8	1.2	0.8	0.7	0.3	60.7	64.3	59.1	58.1
Finland	-1.1	-3.9	-1.3	4.7	0.8	0.1	2.9	7.0	22.6	57.1	54.0	42.7
Sweden	-1.1	-7.4	-1.7	1.3	3.9	-0.8	4.6	4.2	51.3	73.6	70.5	52.4
United Kingdom	-3.1	-5.8	-2.2	-1.3	0.1	-2.1	1.5	0.8	34.4	51.8	50.8	38.4
Euro 12	-5.0	-5.1	-2.6	-2.2	0.5	0.5	2.5	1.4	58.6	73.0	75.4	69.2
Eu 15	-4.6	-5.2	-2.5	-1.9	0.6	0.2	2.5	1.5	54.9	70.2	71.0	62.7

Sources: European Commission, spring 2003, and own calculations.

Note: Data exclude proceeds from the sale of UMTS licences.

치 평균은 4.6%, 유로 12국의 경우 5.0%였으며, 거의 모든 국가가 적자를 기록하여 9개국의 GDP 대비 적자 비율이 1~3%, 3개국은 4~8%, 2개국은 11% 이상이었다. 1991년 EU 15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평균 부채 비율은 55%였으며, 8개국의 부채 비율은 60% 이하, 2개국은 60% 약간 상회, 5개국은 70% 이상이었다.

그러나, 1991~1997년 기간중 모든 EU국가들의 주요 재정수지가 개선되었는데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1980년대에 비해 재정적자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 초에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부채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무엇보다 1992~1993년 경기침체가 재정을 악화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뒤이어, 특히 1996년과 1997년에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1997년(마스트

Change in the general government budgetary position in EU countries and the euro area
(in percentage points of GDP)

	Deficit(-)/Surplus(+)				Primary Deficit(-)/Surplus(+)				Government debt			
	1992~95	1996~97	1998~02	1992~02	1992~95	1996~97	1998~02	1992~02	1992~95	1996~97	1998~02	1992~02
Belgium	3.1	2.4	2.0	7.5	1.0	1.1	0.1	2.2	3.2	-9.2	-19.6	-25.6
Denmark	0.1	2.6	1.7	4.4	-0.7	1.9	-0.5	0.8	6.8	-8.1	-16.0	-17.3
Germany	-0.5	0.7	-0.9	-0.7	0.3	0.7	-1.3	-0.3	16.6	4.0	-0.2	20.5
Greece	1.2	6.1	2.8	10.1	3.1	3.2	0.1	6.4	26.5	-0.5	-3.3	22.7
Spain	-2.3	3.5	3.1	4.3	-0.8	3.0	1.2	3.4	19.5	2.7	-12.6	9.6
France	-3.1	2.5	-0.1	-0.7	-2.3	2.4	-0.7	-0.7	18.8	4.7	0.3	23.7
Ireland	0.8	3.5	-1.7	2.6	-1.5	2.0	-4.2	-3.7	-20.2	-17.7	-31.6	-69.6
Italy	4.1	4.9	0.4	9.4	3.8	2.7	-3.3	3.2	22.6	-3.0	-13.5	6.1
Luxembourg	0.9	1.1	-0.7	1.4	1.0	1.1	-0.7	1.4	1.8	0.4	-0.4	1.9
Netherlands	-1.5	3.0	0.0	1.5	-1.7	2.3	-2.0	-1.3	0.3	-7.3	-17.3	-24.3
Austria	-2.3	3.3	1.4	2.4	-2.1	2.9	1.0	1.7	11.7	-4.5	2.8	10.1
Portugal	2.1	1.9	0.8	4.8	-0.4	-0.1	-0.4	-0.9	3.5	-5.2	-1.0	-2.6
Finland	-2.8	2.6	6.0	5.9	-0.6	2.8	4.0	6.2	34.4	-3.0	-11.3	20.1
Sweden	-6.3	5.7	3.0	2.4	-4.7	5.4	-0.4	0.3	22.3	-3.1	-18.1	1.1
United Kingdom	-2.7	3.6	0.9	1.8	-2.2	3.6	-0.7	0.7	17.4	-1.0	-12.3	4.1
Euro 12	0.0	2.4	0.4	2.8	0.0	2.0	-1.1	1.0	14.4	2.3	-6.1	10.6
Eu 15	-0.6	2.7	0.6	2.7	-0.4	2.3	-1.0	0.9	15.2	0.8	-8.3	7.7

Sources: European Commission, spring 2003, and own calculations.
Note: Data exclude proceeds from the sale of UMTS lic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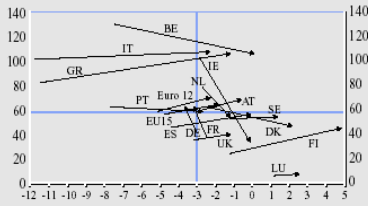
리히트 조약으로의 수렴을 평가하는 기준연도) EU 15국의 일반정부 재정적자 평균 비율이 GDP 대비 2.5%, 유로 12국은 2.6%로 감소하였다. 1996~1997년 사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EU 15국, 유로 12국 각각 2.7%p, 2.4%p씩 감소한 것이다.

이후 1998~2002년에는 혼재된 양상이 나타나는데, 최근 재정적자가 다시 대두되었으나 EU 15국과 유로 12국의 2002년 평균 재정적자는 1997년보다 낮았다. 최근 재대두된 재정적자는 부분적으로 유럽에서 동시 발생한 경기침체로 설명할 수 있으며, 특히 포르투갈은 재정적자 기준치인 3%를 2001년에 초과하였고, 독일과 프랑스는 2002년에 넘어섰다.

General government debt and budget balance, change from 1991 to 2002

(as a percentage of GDP)

x axis budget balance
y axis debt r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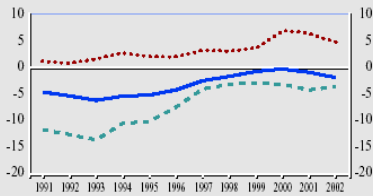


Sources: European Commission, spring 2003, and own calculations.
Note: Arrows indicate changes in debt and budget balance ratios from 1991 to 2002. Data exclude proceeds from the sale of UMTS licences.

General government budget balance, 1991-2002

(as a percentage of GDP)

— EU15 average
... best position
- - - worst position
y axis deficit(-)/surplus(+) ratio



Sources: European Commission, spring 2003, and own calculations.
Note: Data exclude proceeds from the sale of UMTS licences.

EU국가들의 일반정부 부채비율이 1990년대 초에 비해서는 높아졌으나 1997~2002년에는 꾸준히 감소하여, 1997~2002년 기간 EU 15국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최고치일 때보다 8%p 낮은 62.7%, 유로 12국의 부채 비율은 최고치일 때보다 6%p 낮은 69.2%로 감소되었다. 특히 높은 부채 비율을 지녔던 국가 가운데, 벨기에,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의 2002년 부채 비율은 1990년대 초보다 낮은 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부채 비율은 높아졌다. 대조적으로 이전에는 부채 비율 기준치를 준수하던 몇몇 국가들이 2002년에 60% 이상의 부채 비율을 기록하거나(독일과 오스트리아), 60%에 가까운 비율을 기록(프랑스)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1991~2002년 기간 동안 재정적자는 대폭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제한적으로 감소하여 재정수지가 이전보다 개선된 EU 평균으로 수렴하였다. 위의 그림 왼쪽에서 1991~2002년 기간 중 재정적자와 부채 비율의 전반적인 감소를 볼 수 있으며, 특히 적자폭이 큰 국가에서 대규모 적자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중 부채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감소에 그쳤다. 또한 큰 폭의 재정적자를 지녔던 국가의 적자가 가장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적자 감소

와 동시에 재정수지가 이전보다 개선된 EU 평균으로 수렴하고 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최고의 재정수지와 최악의 재정수지의 차가 1991년 13%p에서 2002년 8%p로 줄어든 것이다.

나. 미 국

시대별 미국의 재정정책을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1950년대에는 소극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시행하였다. 1946년의 Employment Act에서는 연방정부가 완전고용, 건전한 성장, 물가의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지출 감축이 경기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보았으나 민간의 소비 증대로 그런 현상이 없었다. 비록 1948~1949년, 1953~1954년, 1957~1958년, 1960~1961년에 경기침체가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크지 않았고, 이에 따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은 거의 없었다. 자동안정장치(사회보장)의 영향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1960년대는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을 시행한 시대였다. 국방분야의 지출 증가 및 세액공제(1962년)를 시도하였고 1963년에 대규모 소득세 및 법인세 감세를 제안하였다. 이에 미국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물가는 안정되었으며, 실업률은 하락하였다. 존슨행정부가 Great Society 사업을 도입하여 복지제도를 확대하였는데, 시작은 AFDC였으며 Medicare와 Medicaid 비용이 급증하였다.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로 Head start, Job Corps, Upward Bound(War on poverty) 등도 도입되었다. 이러한 복지사업의 증대와 베트남 전쟁의 재원을 세입의 증가나 다른 분야의 지출 감축이 아닌 인플레이션으로 조달하여 부채 증가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65년부터 17년간 지속된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세제도가 누진적이므로 인플레이션은 조세 부담이 커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1978년부터 저항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70년대는 장기적인 노동 생산성 하락 현상과 Great Inflation의 시대였다. 물가를 잡기 위해 1974년 긴축적인 통화 및 금융정책을 시행하자 가장 심각한 경기침체가 발생하였다. 닉슨행정부에서는 일시적인 임금 및 물가 통제를 시도하였으며, 오일쇼크와 곡물파동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도 하였다. 1975년 다시 통화공급을 확대하고 감세를 실시하여 안정이 되었지만 1980년대 초에 더욱 심각한 침체를 초래하였다.

1980년대는 감세와 부채의 시대였다. 레이건행 정부는 경제의 활력을 위해 감세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재정지출을 삭감하였다. 한편 비국방 분야를 국방분야로 지출 구조조정, 규제개혁을 시도하였다. 특히 소득세 감세, 가속상각 등(Economic Recovery Tax Act) 감세는 대규모 적자를 야기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긴축적인 통화정책에 따른 고이자율로 외국자본의 투자 증가와 함께 경상수지 적자를 초래하였으나 성장에는 도움이 되었다.

최근인 1990년대는 지출통제와 신성장의 시대다. 1990년대 들어 GRH, BEA, BBA 등의 법안을 통해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진행되었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증세도 있었으며, 지출 측면에서도 국방기반에서 평화 기반(치안요원 증대, 교육, 훈련, 보육 등)으로의 구조조정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축소는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민간 투자를 증대시켰으며,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일 본

1) 1945~1964년의 균형재정 유지 및 FILP 도입

동 기간중에 일본정부는 균형예산, 조세부담률 고정, 보수적인 세수추계라는 3대 재정준칙을 준수하여 균형재정을 고수하였다. 또한 The

Dodge Plan 이래 적자재정에 의한 인플레이션 악화 방지를 위해 재정법으로 건설국채 이외의 국채발행을 금지시켜 동 기간 동안 건설국채 발행 실적도 없었다.

다만 1953년 재정투융자제도(FILP)를 도입하여 FILP의 정부보충채 발행 및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이 시작되었는데, FILP(the Fiscal Investment and Loan Programme)이란 우편저축, 후생연금, 우체국 간이보험 등의 자금을 집중시켜 일본도로공단, 일본정책투자은행(구 일본개발은행) 등 정부기관이나 지방공공기관에 저리로 대출하거나 국채 또는 지방채를 인수하는 제도로 일반회계 대비 30~50%대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인해 ‘제2의 예산’이라 불린다. 동 자금은 공기업이나 특별회계의 설비 확장 등에 사용되었는데, 고속도로나 하수도 사업 등으로 한정하고 공급된 자금은 이용자에게서 징수한 이용료 등으로 변제하도록 하였다.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사회간접자본 정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평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공공부문지출 비효율 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다. 민간부문에 대한 투융자는 민간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기피하거나 혹은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농림어업, 중소기업 등에 주로 사용되는데, 장학금 대여사업, 특별양호양로원 등 복지시설의 정비를 위한 융자사업, 기업 재건으로 필요 불가결한 자금공급(이른바 DIP finance), 기업재생펀드·도시재생펀드의 설립 등이 그 대상이며, 공급된 자금은 대출금 회수로 변제하도록 하였다.

<표 IV-3> FILP의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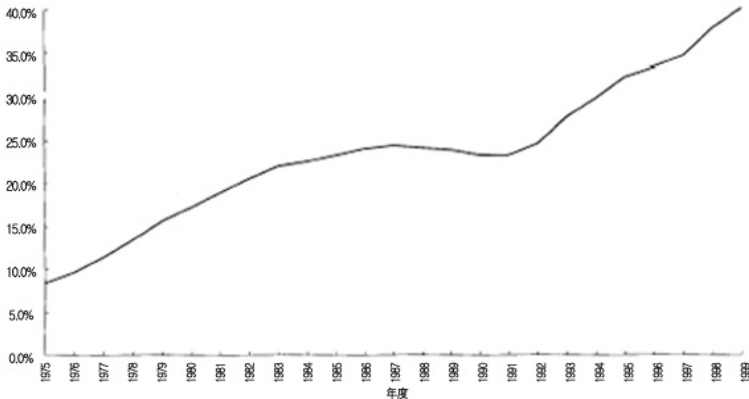
(단위: 십억엔, %)

회계연도	FILP (1)	일반회계 (2)	명목GDP(조엔) (3)	비율	
				(1)/(2)	(1)/(3)
1953	322.8	1,017.1	7.5	31.7	4.3
1954	282.0	1,040.8	7.8	27.1	3.6
1955	321.9	1,018.2	8.9	31.6	3.6
1956	349.7	1,069.2	9.6	32.7	3.6
1957	410.7	1,187.7	11.1	34.6	3.7
1958	417.4	1,331.6	11.8	31.3	3.5
1959	532.9	1,495.0	13.9	35.6	3.8
1960	606.9	1,743.1	16.7	34.8	3.6
1961	773.7	2,063.5	20.2	37.5	3.8
1962	905.2	2,556.6	22.3	35.4	4.1
1963	1,109.7	3,044.3	26.2	36.5	4.2
1964	1,340.2	3,311.0	30.4	40.5	4.4
1965	1,620.6	3,723.0	33.8	43.5	4.8
1966	2,027.3	4,459.2	39.7	45.5	5.1
1967	2,388.4	5,113.0	46.4	46.7	5.1
1968	2,699.0	5,937.1	54.9	45.5	4.9
1969	3,077.0	6,917.8	65.1	44.5	4.7
1970	3,579.9	8,187.7	75.3	43.7	4.8
1971	4,280.4	9,561.1	82.9	44.8	5.2
1972	5,635.0	11,932.2	96.5	47.2	5.8
1973	6,924.8	14,778.3	116.7	46.9	5.9
1974	7,923.4	19,099.8	138.5	41.5	5.7
1975	9,310.0	20,860.9	152.4	44.6	6.1
1976	10,619.0	24,467.6	171.3	43.4	6.2
1977	12,538.2	29,059.8	190.1	43.1	6.6
1978	14,887.6	34,096.0	208.6	43.7	7.1
1979	16,832.7	38,789.8	225.2	43.4	7.5
1980	18,179.9	43,405.0	245.5	41.9	7.4
1981	19,489.7	46,921.2	260.8	41.5	7.5
1982	20,288.8	47,245.1	273.3	42.9	7.4
1983	20,702.9	50,635.3	285.6	40.9	7.2
1984	21,106.6	51,480.6	305.1	41.0	6.9
1985	20,858.0	53,004.5	324.2	39.4	6.4
1986	22,155.1	53,640.4	338.4	41.3	6.5
1987	23,731.3	57,731.1	354.0	41.1	6.7
1988	25,344.0	61,471.1	376.9	41.2	6.7
1989	26,340.5	65,858.9	402.3	40.0	6.5
1990	27,622.4	69,288.7	432.6	39.9	6.4
1991	29,105.6	70,547.2	455.9	41.3	6.4
1992	32,262.2	70,497.4	464.2	45.8	7.0
1993	36,535.6	75,102.4	466.8	48.7	7.8
1994	39,408.2	73,430.5	475.5	53.7	8.3
1995	40,240.1	70,987.1	492.8	56.7	8.2
1996	40,533.7	75,104.9	491.2	54.0	8.3
1997	39,327.1	77,390.0	507.8	50.8	7.7
1998	36,659.2	77,669.2	495.8	47.2	7.4
1999	39,238.9	81,860.1	488.8	47.9	8.0

2) 1965~1974년의 특례국채 및 건설국채 발행 시작

1965년 처음으로 0.2조엔 규모의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특례국채)를 발행하였는데, 재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을 금지하고 있지만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례로써 허용하고 있다.¹²⁾ 이후 1974년까지는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 한편, 1966년부터 공공사업을 위한 건설국채 발행이 시작되었다. 건설국채는 도로나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공공사업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법¹³⁾에 따라 발행되는 국채로 동 자금은 공공사업, 자본출자 및 융자 등에 주로 사용되었다.

[그림 IV-1] 건설국채 발행 추이(GDP 대비 발행 잔액)



- 12) FY2004 국채발행 특별법 제2조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법 4조에 정해진 국채발행 이외에, 정부는 정해진 규정안에 제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FY2004의 일반회계상 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3) 재정법 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어떠한 지출이든 공채나 대출보다는 수익에 근거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공사업이나 투자, 대부는 규정된 결의안에 따라 제한된 양에 한해서는 공채나 대출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3) 1975년~1980년대 초의 재정적자 확대기

1975년부터 일본은 미국, 독일과 공동으로 석유파동으로 침체된 세계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이 재개되어 1975~1989년 중 누적 발행액은 68.6조엔에 달하였다. 동 기간 중에 건설국채의 발행도 증가하였는데, 1970년 0.3조엔에 불과하던 건설국채의 발행이 1970년대 들어 급증하여 1979년 7.1조엔에 달하였다. 이러한 건설국채는 FILP과 더불어 일본 공공부문지출의 효율성 저하를 야기하였다.

한편, 1973년부터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었는데, 경기침체로 세수가 미달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를 본격적으로 확충함에 따라 관련 지출 및 재정적자가 급증하였다.

4) 1980년대 후반의 재정건전화 및 NTT 프로그램 도입

이 기간중에는 국채의존도(국채를 통한 지출재원조달 비율) 0%를 목표로 경상지출 및 투자지출 각각에 대한 증가억제 목표를 설정하는 등 재정지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는데, 적자국채발행 중단목표가 1차 목표시기(1980회계연도) 및 2차 목표시기(1984회계연도)에는 달성되지 못하였으나, 경제호황을 맞았던 1990회계연도에 달성되었다.

한편, 공기업이었던 NTT의 민영화(1985년 4월)로 마련된 약 10조엔 규모의 재원으로, 국채건전화기금을 설치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무이자 대부사업인 NTT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정부보유 NTT 주식 매각대금으로 1986~1988회계연도 중 약 10조엔의 자금이 조성되어 1988회계연도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의 15~20년 만기 무이자 대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시 많은 비판이 있었다. type A는 고속도로와 같은 수익성이 있는 공공투자사업에(20년 만기 융자), type B는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사업에 20년 만기 융자 대부분 수익성

이 없는 사업으로 융자상환을 위해 중앙정부가 보조금 지급에, type C는 지방정부나 일본개발은행 등 공기업의 자본확충을 위한 15년 만기의 융자를 통해 민간부문 활성화 도모에 사용되었다.

<표 IV-4> 일본의 국채발행 추이

(단위: 억엔, %)

연도	국채발행액						국채 의존도	국채 잔고	잔고/ GDP	국채비	국채비 /일반 회계
	신규채			차환채	재투채	합계					
	건설채	특별채									
47~64	발행실적 없음										
1965	1,972	-	1,972	-	-	1,972	5.3	2,000	0.6	221	0.6
1966	6,656	6,656	-	-	-	6,656	14.9	8,750	2.2	489	1.1
1967	7,094	7,094	-	-	-	7,094	13.9	15,950	3.4	1,153	2.3
1968	4,621	4,621	-	-	-	4,621	7.8	20,544	3.7	2,013	3.5
1969	4,126	4,126	-	-	-	4,126	6	24,634	3.8	2,788	4.1
1970	3,472	3,472	-	-	-	3,472	4.2	28,112	3.7	2,909	3.7
1971	11,871	11,871	-	-	-	11,871	12.4	39,521	4.8	3,193	3.4
1972	19,500	19,500	-	-	-	19,500	16.3	58,186	6	4,554	4
1973	17,662	17,662	-	5,958	-	23,620	12	75,504	6.5	7,045	4.9
1974	21,600	21,600	-	6,358	-	27,958	11.3	96,584	7	8,622	5
1975	52,805	31,900	20,905	4,156	-	56,961	25.3	149,731	9.8	10,394	4.9
1976	71,982	37,250	34,732	3,712	-	75,694	29.4	220,767	12.9	16,647	6.9
1977	95,612	50,280	45,333	3,128	-	98,741	32.9	319,024	16.8	23,487	8.2
1978	106,740	63,300	43,440	6,326	-	113,066	31.3	426,158	20.4	32,227	9.4
1979	134,720	71,330	63,390	-	-	134,720	34.7	562,513	25	40,784	10.6
1980	141,702	69,550	72,152	2,903	-	144,605	32.6	705,098	28.6	53,104	12.5
1981	128,999	70,399	58,600	8,952	-	137,951	27.5	822,734	31.4	66,542	14.2
1982	140,447	70,360	70,087	32,727	-	173,175	29.7	964,822	35.1	78,299	15.8

<표 IV-4>의 계속

연도	국채발행액						국채 의존도	국채 잔고	잔고/ GDP	국채비	국채비 /일반 회계
	신규채			차환채	채투채	합계					
	건설채	특별채									
1983	134,863	68,099	66,765	45,145	-	180,009	26.6	1,096,947	38.3	81,925	16.3
1984	127,813	64,099	63,714	53,603	-	181,417	24.8	1,216,936	39.7	91,551	18.1
1985	123,080	63,030	60,050	89,573	-	212,653	23.2	1,344,314	41.1	102,242	19.5
1986	112,549	62,489	50,060	114,886	-	227,435	21	1,451,267	42.4	113,195	20.9
1987	94,181	68,800	25,382	154,490	-	248,672	16.3	1,518,093	42.2	113,335	20.9
1988	71,525	61,960	9,565	139,461	-	210,986	11.6	1,567,803	40.5	115,120	20.3
1989	66,385	64,300	2,085	150,798	-	217,183	10.1	1,609,100	38.8	116,649	19.3
1990	73,120	63,432	-9,689	186,532	-	259,652	10.6	1,663,379	37	142,886	21.6
1991	67,300	67,300	-	188,757	-	256,057	9.5	1,716,473	36.3	160,360	22.8
1992	95,360	95,360	-	214,969	-	310,329	13.5	1,783,681	36.9	164,473	22.8
1993	161,740	161,740	-	218,129	-	379,869	21.5	1,925,393	40.1	154,423	21.3
1994	164,900	123,457	<33,337> [8,106]	228,817	-	393,717	22.4	2,066,046	42.1	143,602	19.6
1995	212,470	164,401	<28,511> 19558	253,767	-	466,238	28	2,251,847	45.0	132,213	18.6
1996	217,483	107,070	<18,796> 91617	265,524	-	483,007	27.6	2,446,581	47.6	163,752	21.8
1997	184,580	99,400	85,180	314,320	-	498,900	23.5	2,579,875	49.6	168,023	21.7
1998	340,000	170,500	169,500	424,310	-	764,310	40.3	2,952,491	57.6	172,628	22.2
1999	375,136	131,660	243,476	400,844	-	775,979	42.1	3,316,687	65.3	198,319	24.2
2000	330,040	111,380	218,660	532,697	-	862,737	36.9	3,675,547	71.6	219,653	25.8
2001	300,000	90,760	209,240	593,296	438,831	1,332,127	35.4	3,924,341	78.3	171,705	20.8
2002	349,680	91,480	258,200	696,155	318,435	1,364,271	41.8	4,210,991	84.6	166,712	20.5
2003	364,450	66,930	297,520	749,678	300,100	1,414,228	44.6	4,594,360	92.3	167,981	20.5
2004	365,900	65,000	300,900	844,507	413,000	1,623,407	44.6	4,826,336	96.4	175,685	21.4

주: < > 내는 감세 특별공채, [] 내는 지진재해 특별공채

5) 1990년대 이후의 재정 악화기

1992~1999년 중 모두 9차례에 걸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실시되었는데, 누적규모 116.4조엔 중에서 사회간접자본 정비 등 공공투자사업은 56%인 65.5조엔에 달하였다. 공공투자사업을 위한 건설국채발행 규모는 총 43.8조엔에 달하며 이외에 일반재정지출을 위한 적자보전용 국채발행도 14.3조엔이나 되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경기불황기에 경기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생산성이 낮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에 자원이 투입됨으로써 잠재성장 능력만 훼손하고 재정투융자에 의한 막대한 부실채권만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유럽 선진국들은 1990년대에 재정투자가 경제성장률 변동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대책으로 공공투자가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투자 규모의 조정, 사업의 효율화·투명화 추진, 도로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자원배분 왜곡 시정, 공공공사 비용의 감축 등이 최근 일본재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표 IV-5> 1990년대의 주요 경제대책

명칭	종합경제대책 (1992년 8월 28일)	종합경제대책 (1993년 4월 13일)	긴급경제대책 (1993년 9월 16일)	종합경제대책 (1994년 2월 8일)	긴급·인고경제대책 (1995년 4월 14일)
내각	미야자와 내각	미야자와 내각	호소카와 내각(연립)	호소카와 내각(연립)	무라야마 내각(연립)
前後 스케줄	뮌헨정상회담(7/6) 참의원선언(7/26)	미야자와 수상 訪美·美수려회담 3.3%성장 (실적치 -0.4%)	호소카와 수상 訪美(9/25~)	日美수려회담(2/11) 경제개혁 관련법	
재정예상	3.3%성장 (실적치 0.7%)		좌동	좌동	2.8%성장 (실적치 1.2%)
사업규모	10조 7,000억엔 (GDP의 2.31%)	13조 2,000억엔 (GDP의 2.83%)	약 6조엔 (GDP의 1.28%)	15조 2,500억엔 (소득세 감세 등을 제외 GDP의 3.21%) 9조 4,000억엔	약 7조엔 (GDP의 1.41%)
공채발행액 (건설공채) (적자융채)	2조 2,500억엔 (2조 2,500억엔) (-)	2조 2,460억엔 (2조 2,460억엔) (-)	3조 6,160억엔 (3조 6,160억엔) (-)	2조 1,820억엔 (2조 1,820억엔) (-)	2조 8,330억엔 (2조 2,622억엔) (5,638억엔)
내용	공공투자 등 확대 8조 6,000억엔 공공사업 등 5조엔 지방단독사업 등 2조 8,000억엔 (공공용지선행취득 포함) 1조 5,500억엔	사회자본·정비 등 10조 6,200억엔 공공사업 등 5조 3,200억엔 지방단독사업 등 3조 5,000억엔 주택금융공사 등 1조 8,000억엔 중소기업대책 1조 9,100억엔 민간설비투자 촉진 5,000억엔 감세 1,500억엔 기타 280억엔	사회자본·정비 등 5조 1,500억엔 공공사업 등 1조 4,500억엔 지방단독사업 등 5,000억엔 주택금융 공사 등 2조 9,000억엔 중소기업대책 3,000억엔 중소기업대책 7,700억엔	공공투자 등 확대 7조 2,000억엔 공공사업 등 5조 2,000억엔 지방단독사업 등 1조 8,000억엔 주택금융 공사 등 1조 2,000억엔 (공공용지선행 취득 2조 2,800억엔 포함) 민간도시기발용지 선행취득제도 창설 5,000억엔 중소기업대책 1조 3,600억엔 국세화대용·융입책 1조 3,600억엔 민간설비투자 촉진 1,000억엔 소득세감면 등 시지 5조 8,500억엔 고용대책 100억엔	한신·철도개발 3조 8,000억엔 긴급발채대책 1조 3,000억엔 과학기술·정보통신 3,300억엔 중소기업대책 등 1조 4,400억엔 수입촉진·규제완화 · 긴급필수대책 등 1,000억엔

<표 IV-5>의 계속

명칭	경제대책 (1985년 9월 20일)	종합경제대책 (1988년 4월 24일)	긴급경제대책 (1988년 11월 16일)	경제신생대책 (1989년 11월 11일)
내각	부리야마 내각(연립)	하시모토 내각	오부치 내각	오부치 내각(연립)
前後 정치 스캐줄	참의원선거(7/23) 오사키에서 APFC개최 (11/16 - 17)	정상회담(5/15~17) 참의원선거(7/12)	자민당총재선(7/24)	자민당총재선(9/24)
정부 재정예상	좌동	1.9%성장(실적치 -2.2%)	좌동	0.5%성장(실적치 0.6%)
사업규모	14조 2,200억엔 (GDP의 2.90%)	약 16조엔(4조엔은 소득세 감세추가·계속 포함 GDP의 3.22%)	약 17조엔 (감세 7조엔 제외 GDP의 3.42%)	약 17조엔 (GDP의 3.40%)
공채발행액 (건설공채) (적자공채)	4조 7,020억엔 (4조 4,910억엔) (2,110억엔)	6조 1,180억엔 (4조 1,080억엔) (2조 100억엔)	12조 3,250억엔 (4조 5,150억엔) (7조 8,100억엔)	7조 5,600억엔 (3조 8,200억엔) (3조 7,400억엔)
내용	공공투자 등 확대 12조 8,100억엔 공공사업 등 4조 6,300억엔 시설장비등 9,100억엔 (과학기술·정보통신 4,000억엔, 교육·복지· 防災 등 5,100억엔) 토지 유효이용촉진 1조 4,100억엔 UR관리대책 1조 1,100억엔 지방단속사업 등 1조엔 주택금융공채 5,200억엔 중소기업대책 등 1조 2,800억엔 기타 1,240억엔	국가중심의 사회자본경비 6조 2,000억엔 환경·新에너지 1조 6,000억엔 정보통신고도화 등 1조엔 복지·의료·교육 1조엔 물류효율화 8,000억엔 건립방재 800억엔 기타 1조엔 지방단속사업 1조 5,000억엔 소득세감세 추가계속 4조엔 정책감세 등 6,000억엔 토지·채권 유통화대책 2조 3,000억엔 중소기업대책 2조엔 기타 500억엔	사회자본경비 8.1조엔 정도 공공사업 5.7조엔 정도 시설비 등 1.8조엔 정도 지해복구 0.6조엔 정도 금융대책(금융기관이 대출에 소극적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5.9조엔 정도 지역진흥권 0.7조엔 정도 주택금융공채 1.2조엔 정도 고용대책 1.0조엔 정도 아사리대책 1.0조엔 정도 (항구적 감세 6조엔 초소득과세 감세 법인과세감세)	사회자본경비 6.8조엔 정도 물류효율화·경쟁력강화 1.1조엔 정도 생활기반증진 1.2조엔 정도 정보통신·과학기술진흥 등 경제발전 기반기획화 1.2조엔 정도 소사녀 및 고령화·교육·환경문제 1.1조엔 정도 긴급안전방재 0.9조엔 정도 재해복구 0.7조엔 정도 공공사업계약 선지급 0.6조엔 정도 중소기업대책 등 7.4조엔 정도 주택금융공채 2.0조엔 정도 기타 1.9조엔 정도

자료: 林建久(編), 『日本財政要覽』

3. 외국의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가. 미 국

Hamilton and Flavin(1986)의 경우 Debt dynamics에 기초한 transversality condition이 만족되는지를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으로 확인하고 있다. 1964년에서 1984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검정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검정 방법은 이자율이 매기 일정하다고 가정하여야 하므로 문제가 되고 있다. Kremers(1988)는 시차차분의 기간을 증가시키면 부채 시계열이 단위근을 갖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하였다.

고정적 이자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Trehan and Walsh(1988, 1991)은 정부채무의 지속 가능성을 정부부채와 기초재정수지의 공적분(cointegration) 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Hamilton and Flavin과 동일한 기간의 자료를 사용한 결과 미국의 재정정책이 유지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akkio and Rush(1991)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이 공적분되고 있는지를 이용하여 재정정책의 유지가능성을 검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본질적으로 Trehan and Walsh와 동일하며, 추정 결과를 보면 미국의 재정정책이 1980년대에는 유지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hmed & Rogers(1995)는 재정이 유지가능하려면 총지출과 세입의 격차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나치게 커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지출, 이자지급 및 세입이 안정적인 공적분 관계를 가지면 재정정책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1792~1992)과 영국(1692~1992)의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 따르면 재정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기각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ohn(1998)은 기초재정수지가 정부지출이나 경기의 변동에 영향을

받으므로 기존의 공적분 검정에 있어서 누락변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지출이나 수입이 적절히 조정되지 않고 공적분 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Bohn(1998)은 부채의 변화에 대한 기초재정수지(primary budget surplus)의 반응을 이용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다. 여러 기간에 대한 검증 결과는 모두 재정이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 일 본

대부분의 연구는 일본의 국가부채는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Asher and Dugger(2002), Dekle(2002), Madsen(2002), Fukao(2003)). 이들은 대부분 Hamilton and Flavin(1986)이나 Bohn(1998)의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은 일본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200%까지 증가하고 재정적자는 GDP 대비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Borda & Weinstein(2004)은 전통적인 견해와 반대되는 결과를 발표하여 흥미를 끌고 있다. 이들은 Blanchard(1990)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비교적 적은 조세부담률의 조정에 의해 일본의 국가부채가 100년의 기간에 걸쳐 지속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이들은 총부채 대신에 순부채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의 현재 부채부담이 높지 않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의 인구가 장기적으로 0로 간다는 기존의 가정 대신에 일정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간다는 가정을 채택함으로써 다른 연구보다 훨씬 낮은 사회복지비 부담을 사용하였다. 셋째, 일부 감소하는 인구계층에 대해 사회복지급여를 낮춤으로써 사회복지지출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첫 번째 이유인 순부채의 사용이 정당한지에 대해선 앞으로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V.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및 적정수준

1. Bohn's Test

가. Benchmark Test

1) 추정 모형

정부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다수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정부부채의 규모가 크거나, 그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정부 재정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 우리나라도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그에 따라 정부부채 규모가 급증하자 재정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의 유지가능성에 대한 검증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의 방법인 Bohn's test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재정안정성을 검증한다. 다만 재정운영 방식의 변화,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의 실질적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Bohn의 모형을 변형하여 사용한다.

Bohn(1998)은 정부가 시점간 예산제약(inter-temporal budget constraint) 또는 tax smoothing을 고려하는 경우 재정수지가 기본적으로 부채수준의 함수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GDP 대비 정부부채가 증가하는 경우에 정부가 이전보다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한다면 재정의 유지가능성은 확보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다만 재정수지와 정부부채와의 관계는 장기적인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재량적인 재정지출의 규모나 경기 변동에 따른 세입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Bohn은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이용하여 재정의 유지가능성을 점검하였다.

$$(1) s_t = \rho \cdot d_t + \mu_t = \rho \cdot d_t + \alpha_0 + \alpha_G GVAR_t + \alpha_Y YVAR_t + \epsilon_t,$$

$$GVAR = (g - g^*)/y, YVAR = (1 - y/y^*) \cdot (g^*/y).$$

여기서, s 와 d 는 각각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와 정부부채를 나타낸다. 그리고 μ_t 및 ϵ_t 는 오차항을 의미하며, ρ 와 α 는 계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g 는 실질 정부지출, y 는 실질 GDP를 의미하고, $*$ 는 각각의 추세를 의미한다. 재정지출 및 GDP의 추세는 Hodrick and Prescott Filter를 사용하여 구하였다.¹⁴⁾ 따라서 GVAR은 정부지출이 추세보다 높은 정도를 나타낸다. YVAR의 경우 좌측은 추세보다 성장률이 낮은 경우를 나타내며, 우측은 정부지출(또는 세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따라서 YVAR은 사실상 정부세입이 추세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GVAR 및 YVAR의 계수는 음수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정부부채비율의 계수가 유의한 양수로 나타나면 정부부채는 지속가능한 것이 된다. Benchmark test에서는 Bohn(1988)이나 Valdrerra(2005)처럼 비선형(non-linear) 반응을 나타내는 변수(DVAR = $(d - \bar{d})/2$, $\bar{d}$ = 평균)을 포함시켰다.

2) 자료

자료의 기간은 1970년부터 2004년까지이다. 그리고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두 가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첫째 자료는 정부가 대외에 발표하는 자료이다(Data 1). 따라서 기초재정수지는 정부가 발표하는 통

14) Bohn의 경우에는 Barro(1986) 등이 사용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정확한 추세를 구한 자료가 없다.

합재정수지에서 이자지급을 제외하여 계산하였다. 정부부채의 규모도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부정확해질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fund)이 적립식(funded system)이어서 재정흑자가 누적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의 흑자는 정부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적 노력과 관계가 거의 없다. 따라서 재정수지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의 흑자(순적립 규모 기준)를 제외하였으며, 정부의 지출 규모를 계산할 때도 국민연금의 지출 규모는 제외하였다. 정부 채무에 있어서도 금융성 채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외국환평형채권(foreign currency stabilization bond)은 형식은 국채이지만 재정지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성 채무이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환평형채권은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부채무를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채무계산에서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요소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구조조정에 사용된 보증채무이다. 이러한 보증채무는 정부와 일반 국민 모두 사실상 정부의 부채로 인식하고 있었고, 2003년에 발표된 공적자금 상환계획에서도 공적자금(정부보증채권)은 정부와 금융부분이 분담하여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재정의 부담 규모는 2003년 기준 49조원이며 2003년부터 국채를 발행하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상환하기로 한 채무 규모는 정부의 채무로 계산하고, 발행 시점부터 정부부채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발생 시점도 1998년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2년도에 49조원의 채무가 존재한 것으로 계산하고, 2003년 이전 연도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환산하였으며, 2003년 이후부터 정부가 상환한 금액은 정부부채에서 차감하여 공적자금으로 인한 부채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Data 2는 이렇게 계산한 재정수지, 정부지출, 정부부채를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정부수지를 계산할 때 순융자(net lending)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융자는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것이며, 융자상환은 금융자산

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순융자의 변화로 인한 재정수지의 감축은 부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Data 3은 순융자를 고려하여 재정수지 및 정부지출을 계산한 경우를 의미한다.

3) 추정 결과

Bohn의 추정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결과를 살펴보자. 자료를 조정하지 않은 Data 1의 경우를 보면 부채수준(d)의 계수가 음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료를 조정한 Data 2 및 Data 3의 경우에는 부채수준(d)의 계수가 양수로 나오고 있지만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Benchmark test에 의존하는 경우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증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다음 장에서 논의할 것처럼 구조변화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fitting 정도를 나타내는 R^2 값도 매우 낮아 Bohn's test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V-1> Benchmark Test

	d	GVAR	YVAR	DVAR	Ad- R^2
Data 1	-0.026 (-0.300)	-0.782** (-2.809)	-0.399 (-0.698)	-0.353 (-0.148)	0.172
Data 2	0.055 (1.036)	-0.820** (-4.009)	-0.376 (-0.899)	0.917 (0.729)	0.402
Data 3	0.014 (0.229)	-0.614* (-2.052)	0.078 (0.162)	1.847 (1.284)	0.051

주: Data 1 : 정부 통계상 재정수지 및 부채 사용,

Data 2 : 국민연금 수치 및 외국환평형채권 제외, 공적자금 부채 추가

Data 3 : 국민연금과 융자 수치 및 외국환평형채권 제외, 공적자금 부채 추가

() 안은 t값

*는 5% 유의수준, **는 1% 유의수준을 의미함

<표 V-2> Regression Results of Valderrama

Sample	d	GVAR	YVAR	R ²
1975~2003	0.0677 (0.0429)	-0.800** (0.150)	-0.447* (0.170)	0.54
1975~1989	-0.0448 (0.0856)	-0.489** (0.135)	-0.274 (0.164)	0.73
1990~2003	0.153** (0.0235)	-0.917** (0.192)	-1.151** (0.150)	0.87

주: Standard errors are in parenthesis

*는 5% 유의수준, **는 1% 유의수준을 의미함

자료: Valderrama(2005)

자료의 기간이나 자료의 수치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유사한 결과는 Valderrama(2005)가 한국자료를 이용하여 Bohn's Test를 적용한 결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Valderrama(2005)가 1975년부터 2003년까지의 전체 자료를 사용한 경우를 보면 국가채무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간을 둘로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는 1990년 이후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부채비율의 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즉, 자료를 분리하여도 1975년부터 1989년까지는 재정의 유지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Bohn's test with Political factors

1) 구조적 변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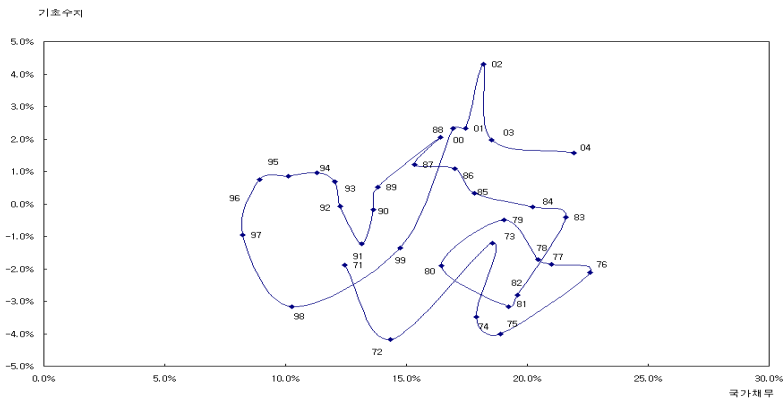
Persson and Tabellini(2000)는 Bohn(1988)이 사용한 검증방법의 기초가 되고 있는 Barro(1970)의 tax-smoothing 모형이 전시(war time)의 대규모 재정적자나 부채 누적에 대한 설명력은 높지만 1970년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 부채가 지속적으로 누적된 사유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정치 및 제도적 특성 등이 정부

부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이론적 모형과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립정부 또는 불안정한 정권, 그리고 거부권이나 의사결정체계의 복잡성 등이 정부부채의 누적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에 따른 재정운영의 구조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기초재정수지와 정부부채를 plotting하여 보자. 아래 그림에 나타난 plotting 결과를 보면 정부의 재정운영이 기간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80년대 이전, 1980년대 초반부터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1998년 이후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시점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아래 그림은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재정운영 기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재정 건전화를 강력하게 추진한 시점은 1980년대이다. 1980년대 초에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의 불안정성이 심각해지자 새로 들어선 전두환 정부는 경제 및 재정안정화 정책을 추구하였다.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도 이러한 정책 변화에 기인한다. 재정건

[그림 V-1] 기초재정수지와 국가채무(GDP 대비 비율)



전화 정책에 따라 1980년대에는 국가부채가 낮아지는 시점에도 기초 재정수지를 흑자로 유지하였고, 결과적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정(+)의 관계가 아닌 부(-)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1980년대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재정의 유지가능성이 Bohn's test를 통해 잘 검증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Valdramma(2005)가 정부부채에 대한 재정수지의 비선형(non-linear) 반응을 고려하여 $(d - \bar{d})^2$ 라는 변수를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고있던 시기가 포함된 1975년부터 1989년까지는 재정의 유지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고려하여 Bohn's test를 시도한다.

2) 구조 변화 모형

재정건전화 정책, 정권의 교체 등에 따라 재정운영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how test를 실시한다. 먼저 정권의 교체와 그에 따른 재정기조의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1980년대 초반을 대상으로 검정한 결과를 보면 모든 자료에서 F값이 5 이상이므로, 1% 유의수준에서 구조적 변화가 없다는 것을 기각하고 있다. 즉, 1982~83년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초에 시작된 재정안정화 정책이 반영된 적절한 시점은 1983년으로 한다. 또 다른 구조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시점은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1998년이다. Chow test로 1983년 이외에 추가적인 구조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자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발표 자료인 Data 1을 기준으로 본 추정결과는 1998년에 구조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 변화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에 재정운영에 있어서 구조 변화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표 V-3> Chow Test (F 값)

	1982	1983	1984	1997	1998
Data 1	17.342** (51.982)	18.622** (53.892)	15.969** (49.805)	6.103** (27.893)	6.252** (28.356)
Data 2	12.688** (43.985)	12.105** (42.806)	8.973** (35.840)	2.320 (13.404)	2.226 (12.953)
Data 3	5.950** (27.414)	6.121** (27.951)	5.206** (24.945)	0.881 (5.731)	1.009 (6.485)

주: Data 1 : 정부 통계상 재정수지 및 부채 사용

Data 2 : 국민연금 수지 및 외국환평형채권 제외, 공적자금 부채 추가

Data 3 : 국민연금과 융자 수지 및 외국환평형채권 제외, 공적자금 부채 추가

*는 5% 유의수준, **는 1% 유의수준을 의미함

() 안은 Log likelihood ratio값

Chow test에 나타난 구조적 변화를 감안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구조 변화 기간에 단순더미를 사용하여 추정을 시도하고, 다음에 기간을 분리하여 추정한다. 특정 기간에 대한 더미를 사용하는 경우 더미가 사용된 기간이 다른 기간에 비해 절편(intercept)은 차이가 있지만 기울기(slope)는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더미가 사용된 기간과 다른 기간을 비교할 때 정부부채에 대한 재정수지의 반응은 동일하지만 평균적인 재정수지는 두 기간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기간을 분리하여 추정하는 것은 절편(평균적인 재정수지)과 기울기(정부부채에 대한 반응)가 모두 달라졌다고 보고 추정하는 것이다.

먼저 구조 변화 기간을 단순더미로 처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정하지 않은 자료인 Data 1의 경우를 보면 1982년 이후를 더미로 사용한 경우 국가채무 비율에 대한 계수가 0.141이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ohn(1988)의 경우 해당 계수가 0.03~0.04 수준이

었던 것에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재정적자에 훨씬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더미의 계수가 0.038이고 유의하므로 1982년 이후가 이전보다 재정수지가 GDP 대비 3.8%p 정도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값도 크게 높아짐으로써 더미를 사용하는 방식이 의미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반면 1983~1997년 더미를 사용한 경우는 정부부채 비율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고, R^2 값도 작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더미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조정한 자료를 이용한 Data 2의 경우를 보면 1983~1997년 더미를 사용한 결과가 더 잘 나오고 있다. Data 1의 경우 연금 수지, 공적자금 상환 등이 적절히 조정되지 않음으로써 1998년 이후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83~1997년 더미를 사용한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추정결과를 보면 국가채무 비율에 대한 계수가 0.199이며 유의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정은 유지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더미변수의 계수가 0.025이고, 유의하므로 1983~1997년 기간이 다른 기간에 비해 재정수지가 GDP 대비 2.5%p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순융자를 고려한 Data 3의 경우에도 1983~1997년 더미를 사용한 결과가 더 잘 나오고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국가채무 비율에 대한 계수는 Data 2와 유사한 수준인 0.163이며 유의하다. 또한 더미변수의 계수도 Data 2와 동일한 수치인 0.025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수준 변화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재정은 유지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더미의 기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해당 기간의 선택에 유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 V-4> Regression Results with Dummy

	d	GVAR	YVAR	Dummy	DVAR	R ²
Data 1 (83년 이후 더미)	0.141** (2.802)	-0.198 (-1.217)	-1.437** (-4.407)	0.038** (8.658)	-3.015* (-2.304)	0.802
Data 1 (83 ~ 97 더미)	0.033 (0.343)	-0.583 (-1.904)	-0.558 (-0.977)	-0.012 (1.445)	-1.248 (-0.513)	0.323
Data 2 (83년 이후 더미)	0.065 (1.701)	-0.343* (-1.986)	-1.351** (-3.824)	0.028** (5.284)	-3.039** (-2.585)	0.700
Data 2 (83 ~ 97 더미)	0.199** (4.187)	-0.468** (-2.850)	-0.603 (-1.957)	0.025** (5.149)	0.655 (0.713)	0.693
Data 3 (83년 이후 더미)	0.028 (0.533)	-0.342 (-1.281)	-0.497 (-1.119)	0.023** (3.447)	-0.925 (-0.630)	0.415
Data 3 (83 ~ 97 더미)	0.163** (2.767)	-0.422 (-1.772)	0.031 (0.081)	0.025** (4.383)	1.967 (1.744)	0.506

주: Data 1 : 정부 통계상 재정수지 및 부채 사용

Data 2 : 국민연금 수지 및 외국환평형채권 제외, 공적자금 부채 추가

Data 3 : 국민연금과 융자 수지 및 외국환평형채권 제외, 공적자금 부채 추가

1. () 안은 t값

2. *는 5% 유의수준, **는 1% 유의수준을 의미함

정치적 변화를 감안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Chow test에서 나타난 구조적 변화를 정부부채의 계수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식 (1)을 기간별로 나누어 추정하는 것과 같다. Valdrrama(2005), Bohn(1988)도 기간을 분리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간의 구분은 Chow test의 결과를 바탕으로 ① 1982년 이전과 1983년 이후 ② 1983~1997년과 나머지 연도로 하였다. 정부통계자료를 사용한 Data 1의 경우는 1983년을 기준으로 기간을 분리한 경우에만 정부부채 비율의 계수가 유의한 양수로 나왔다. 그러나 1982년 이전에는 정부부채 비율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다. 반면 조정한 자료인 Data 2와 Data 3을 사용한 경우 두 기간 모두에서 정부부채 비율의 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

<표 V-5> Regression Results with Structural Change

		d	GVAR	YVAR	DVAR	R ²
Data 1	83년 이후	0.217** (4.164)	-0.569** (-2.675)	-1.765** (-4.801)	-2.551 (-1.904)	0.769
	82년 이전	-0.028 (0.181)	-0.008 (-0.033)	-1.011 (-1.749)	-0.808 (-0.197)	0.411
Data 2	83 ~ 97년	0.073* (2.186)	-0.875** (-8.952)	-1.068** (-3.216)	-1.910** (-3.511)	0.946
	71 ~ 82년	0.194* (2.384)	-0.220 (-0.988)	-0.905* (-1.972)	2.907 (1.691)	0.306
	98 ~ 04년					
Data 3	83 ~ 97년	0.102* (2.232)	-0.826** (-5.328)	-0.833* (-2.450)	-0.620 (-1.164)	0.830
	71 ~ 82년	0.329* (2.232)	-0.388 (-1.122)	0.233 (0.368)	2.218 (0.877)	0.306
	98 ~ 04년					

주: Data 1 : 정부 통계상 재정수지 및 부채 사용

Data 2 : 국민연금 수지 및 외국환평형채권 제외, 공적자금 부채 추가

Data 3 : 국민연금과 융자 수지 및 외국환평형채권 제외, 공적자금 부채 추가

1. () 안은 t값

2. *는 5% 유의수준, **는 1% 유의수준을 의미함

타나고 있다. 다만 1% 수준에서 유의성이 확보되지는 않고 있다. 또한 Data 1의 경우와는 달리 1971~1982년, 1998~2004년 기간에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정 결과에서 강력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였던 1980년대에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한다.

3) 균형재정 준칙

다음으로 정부의 재정운용 방식을 생각해보자. 정부는 정부부채가 커지는 경우 Bohn이 예측한 것처럼 재정수지를 개선함으로써 재정안

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처럼 소비세의 세율을 올리거나 미국의 지출통제법처럼 지출 총액에 제한을 두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와는 다르게 예상되는 세입 내에서 세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균형재정준칙(balanced budget rule)을 재정운영의 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재정준칙하에서는 기초재정수지가 흑자가 되므로 자연스럽게 정부부채가 감소된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1980년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전까지 세입의 규모 안에서 세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다(여기서는 균형재정준칙이 사용된 기간을 1983년부터 1997년까지로 한다).

만약 정부가 재정의 수지 균형을 강제하게 되면 기초재정수지 흑자의 규모는 이자지급 규모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균형재정준칙은 예산에만 적용되므로 GDP의 변화나 정부지출의 변동에 따라 사후적인 재정수지는 이자지급의 규모와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요소를 감안하면 Bohn의 추정식은 아래와 같다.

$$(2) \quad s_t = \delta r_t D + \rho d_t (1 - D) + \alpha_0 + \alpha_G GVAR_t + \alpha_Y YVAR_t + \epsilon_t,$$

여기서 D 는 수지 균형을 추구한 시점을 나타내는 더미이며, r_t 는 이자지급의 GDP 대비 비율이고, δ 는 r_t 의 계수이다.

균형재정준칙이 적용된 기간에는 기초재정수지가 흑자가 되므로 당연히 재정의 안정성은 확보된다. 따라서 균형재정준칙이 적용되지 않은 기간에서 정부부채에 대한 기초재정수지의 반응이 양수이면 재정의 안정성이 검정된다. 이러한 추정식과 앞에서 살펴본 더미 모형이나 구조변화 모형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더미 모형의 경우 기간별로 재정수지의 수준(level) 차이가 발생하는 반면, 식 (2)는 재정수지의 차이가 균형재정준칙에서 파생된다. 또한 구조 변화 모형은 기간에 따른 구조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반면 식 (2)는 구조 변화가 바로 균형재정준칙이라고 본다.

추정결과를 보면 정부발표 자료를 사용한 Data 1의 경우에는 정부부채비율의 계수가 양수이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R^2 값도 작아 설명력도 낮으므로 정부부채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적절한 모형으로 보이지 않는다. 반면 조정한 자료를 사용한 Data 2와 Data 3의 경우에는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확인되고 있다. 즉, 정부부채 비율의 계수가 Data 2와 Data 3의 경우 각각 0.240과 0.221이며, 유의하다. 또한 정부부채 비율의 계수가 Bohn(1988)이 미국의 자료로 추정한 결과보다 상당히 큰 값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정부가 정부부채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균형재정준칙을 사용하여 정부부채 수준을 감소시켰으며, 균형재정준칙이 사용되지 않은 기간에는 정부부채가 증가할 경우 재정수지를 개선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부채에 대한 정부 또는 국민의 성향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향후에도 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표 V-6> Regression Results with Balanced Budget Rule

	d	GVAR	YVAR	DVAR	rt*D	R^2
Data 1	0.101 (0.642)	-0.605 (-1.900)	-0.362 (-0.518)	-1.441 (-0.586)	-0.307 (-0.145)	0.330
Data 2	0.240** (3.516)	-0.444** (-2.656)	-0.465 (-1.342)	0.150 (0.146)	0.043* (2.315)	0.702
Data 3	0.221** (2.614)	-0.426 (-1.728)	0.223 (0.534)	1.359 (1.065)	0.048* (2.046)	0.527

주: Data 1 : 정부 통계상 재정수지 및 부채 사용

Data 2 : 국민연금 수지 및 외환평형채권 제외, 공적자금 부채 추가

Data 3 : 국민연금과 융자 수지 및 외환평형채권 제외, 공적자금 부채 추가

() 안은 t값

*는 5% 유의수준, **는 1% 유의수준을 의미함

2. tax gap 검증

본절에서는 제Ⅲ장 제4절의 우리나라 장기재정지출 전망 결과를 이용하여 Blanchard et al.(1990)에 따라 단기·중기·단기에 대해 tax gap을 계산해 보았다. Blanchard et al.(1990)은 재정당국의 ‘과거’ 재정정책 행태를 분석한 Bohn(1988)과는 달리 향후 재정지출 전망치에 기초하여 ‘현재 및 미래’의 재정정책 기조가 국가채무의 누적을 야기하는 지를 점검하는 지표로 제시하였다. 특히 단기·중기·단기 등 전망 기간을 달리해가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입수준인 t^* (sustainable tax rate)와 현재의 세입수준인 t (current tax rate)와의 차이로 정의되는 tax gap을 계산해 봄으로써 국가채무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건전화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ntinuous time으로 되어 있는 Blanchard et al.(1990)의 방법론을 discrete time version으로 바꾸어 한국경제에 적용해 보았다. 우선, n 기 후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b_n)은 다음과 같이 이미 발생한 채무의 원리금과 앞으로 발생하게 될 기초재정적자의 원리금 합계로 표현될 수 있다. 일단 n 기 동안의 경제성장률(g)과 금리(γ)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자.

$$b_n = b_0 \cdot (1 + \gamma - g)^n + \sum_{t=1}^n (e_t - t_t) \cdot (1 + \gamma - g)^{n-t}$$

단, e (비이자 재정지출/GDP 비율), t (총세입/GDP 비율)

이 식을 현재($t = 0$) 시점에서의 현재가치로 전환하면, $b_n = b_0$ 로 만드는 $t^*(t_t^* = t^* \text{ for all } t)$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sum_{t=1}^n \frac{t^*}{(1+\gamma-g)^t} = b_0 \cdot \left\{ 1 - \frac{1}{(1+\gamma-g)^n} \right\} + \sum_{t=1}^n \frac{e_t}{(1+\gamma-g)^t}$$

최종적으로 tax gap은 이렇게 계산된 t^* 에서 현재 세입규모인 t_1 을 차감하여 계산된다. 계산된 tax gap이 (+)이면 대상기간중에 매년 해당 규모만큼의 비이자 재정지출을 삭감하거나 재정수입을 증가시켜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tax gap을 분석대상 기간을 단기(1년) 및 중기(5년), 장기(40년 및 66년)로 구분하여 계산하였다. 단기(1년) 및 중기(5년)에 대한 tax gap은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통합 재정 전망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는데, 국채이자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차이($\gamma - g$)는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중기거시경제 전망치¹⁵⁾를 이용하여 매년 다른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 제Ⅲ장 제4절의 우리나라 장기재정지출 전망 결과를 이용하여 장기(40년 및 66년) tax gap을 계산할 때에는 국채이자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차이($\gamma - g$)가 매년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여러 가지 수치에 따라 계산하였다.

2005~2009년 기간에 대한 단기(1년) tax gap의 계산 결과, 전년도 중앙정부부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입 비율의 조정규모는 매년 음(-)로 나타나 세입 비율을 전년도 세입 비율보다 다소 낮춰도 전년도 중앙정부부채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2009년 기간중 국채이자율 전망치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1.5%p 이상 낮고, 비이자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5~2009년에 대한 중기(5년) tax gap도 -0.68%p로 동 기간 중에 세입 비율을 2004년 수준인 19.86%보다 0.68%p 낮게 유지하더라도 2009년 중앙정부부채 비율이 2004년 수준인 25.19%보다 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동 기간중에 이러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이외에 국가재정운용에 필요한 외

15) 2005년 -2.8%, 2006년 -2.5%, 2007년 -1.7%, 2008년·2009년 -1.5%

<표 V-7> 단기(1년) 및 중기(5년) tax gap 계산 결과

(단위: %p)

	2005	2006	2007	2008	2009
전년도 부채비율 b_0	25.19	28.82	30.02	29.13	27.93
적정 세입비율 $t^*(A)$	19.43	19.08	18.83	18.83	19.24
전년도 세입비율 $t_0(B)$	19.86	20.44	20.47	20.57	20.67
단기 tax gap(A-B)	-0.43	-1.36	-1.65	-1.75	-1.44
중기 tax gap	-0.68				

국환평형기금채권이나 국민주택기금채권이 발행된다면 동 규모만큼 중앙정부부채 비율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장기(40년 및 66년) tax gap의 계산결과는 <표 V-8>에 정리된 바와 같이 국채이자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차이($\gamma - g$)를 여러 가지 값으로 설정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우선 국채이자율과 경제성장률이 동일할 것이라는 전망하에서는 단기(1년) 및 중기(5년) tax gap과는 달리 40년 tax gap 및 66년 tax gap이 모두 양(+)으로 나타나, 동 기간 중에 세입비율을 2004년 수준인 19.86%보다 높게 유지하여야 중앙정부 부채비율이 2004년 수준인 25.19%보다 커지지 않는다. 66년(2005~2070년) tax gap이 40년(2005~2044년) tax gap에 비해 1.1~1.3%p 정도 높은 것은 국민연금이 2047년에 고갈되어 이때부터 연금 지급을 위한 막대한 규모의 재정지출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장기 tax gap은 ($\gamma - g$)가 증가함에 따라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장기 tax gap이 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계산해 보니 국채이자율과 경제성장률이 동일할 것이라는 전망하에서는 시나리오 1에서는 2013년, 시나리오 2 및 3에서는 각각 국민연금이 고갈되기 이전인 2040년 및 2029년으로 우리나라 재정이 중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출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 장기(40년 및 66년) tax gap 계산 결과

(단위: %p)

(γ-g)	장기(40년) tax gap 2005~2044			장기(66년) tax gap 2005~2070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1.00	2.46	0.55	1.42	4.02	1.88	2.91
-0.50	2.24	0.37	1.22	3.70	1.60	2.60
0.00	2.03	0.19	1.01	3.38	1.32	2.29
0.50	1.81	0.02	0.81	3.05	1.05	1.98
1.00	1.60	-0.16	0.61	2.73	0.77	1.68

<표 V-9> 장기 tax gap이 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γ-g)	tax gap이 양(+)으로 전환되는 시점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1.00	2010년	2035년	2025년
-0.50	2011년	2037년	2028년
0.00	2013년	2040년	2029년
0.50	2016년	2044년	2031년
1.00	2019년	2049년	2034년

3. IGDC지수(International Government Debt Comparisons Index)

본절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변화되어온 OECD 국가들의 세입·세출·재정수지·국가부채 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인구구조·재정·정치변수를 상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MF(1982, 1990)의 International Expenditure Comparisons(IEC) 지수는 각국의 재정지출의 실적치를 이러한 회귀분석에 의한 추정치로 나눈 비율을 이용하여 그 나라의 재정지출의 규모가 적절한지 분석하고 있다. 물론 다중회귀분석의 추정치는 단지 주어진 사회·경제·인구구조·재정·정치적 여건하에서 기대되는 국제적인 평균치를 의미할 뿐이며 그 자체가 '적정

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해석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회귀분석에 의해 각 변수들의 계수를 추정한 다음 이 추정치를 이용하여 주어진 사회·경제·재정·정치 여건하에서 각국의 국가부채의 예상치를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각국의 국가부채의 실적치를 이 예상치로 나누어 100을 곱한 결과를 국가부채비교지수(International Government Debt Comparison(IGDC) Index)라고 정의한다. 이 IGDC지수가 100보다 크면 그 나라의 국가부채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예상되는 수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100보다 작으면 낮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IGDC가 100보다 크면 그 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종속변수로는 총세입 또는 비이자 재정지출 또는 기초재정수지 또는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T/Y , G/Y , PB/Y , GD/Y)을, 설명변수로는 De Haan and Sturm(1997), Roubini and Sachs(1989a, 1989b), Woo(2003), Tujula(2004)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재정·정치변수들을 이용하여 25개 OECD국가의 1960~2003년 시계열 데이터¹⁶⁾에 대해 pooled OLS estimation하였다.

사회·경제변수

- ① PCGDP: 경제수준(1인당 GDP, 미달러)
- ② OLD: 고령화율(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
- ③ OPEN: 대외개방도(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및 수입의 비중, %)

재정변수

- ④ DSC: Debt-Servicing Costs(Real Interest rate minus the growth rate, multiplied by the lagged debt-GDP ratio)¹⁷⁾

16) 30개 OECD 국가 중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통계가 입수 불가능한 스위스, 체코, 헝가리, 멕시코, 터키를 제외하였으며, 통계 출처는 OECD의 'Economic Outlook', 'Labour Statistics', 'Annual National Account: vol. 1' 및 Klaus et al. 의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 1960~2002'임.

정치변수

- ⑤ POL1: the power dispersion index (from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 : 1960~2002, 1=single party government; 2=minimal winning coalition; 3=surplus coalition, 4=single party minority government; 5=multi-party minority government; 6=temporarily caretaker government)
- ⑥ POL2: Schmidt index (Cabinet Composition from Comparative Political Data Set: 1960~2002, 1=hegemony of right-wing parties(social-democratic and other left parties in percentage of total cabinet posts=0); 2=dominance of right-wing and centre parties(<33.3%); 3=balanced between left and right (33.3%< · <66.6%); 4=dominance of social-democratic and other left parties(>66.6%); 5=hegemony of social-democratic and other

우선 종속변수 각각을 PGDP의 자연대수 및 그 자승, OLD, OPEN, DSC, POL1, POL2의 수준에 대해 regression 한 후, 이러한 장기식의 residual을 error correction term으로 하여 단기식을 추정하였다. 단기식의 설명변수로는 GDP gap, 실업률 · OLD · OPEN · DSC의 전기대비 차분, POL1, POL2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만을 포함시켰다.

<표 V-10>에서 보듯이 1인당 GDP 및 고령화율의 증가는 세입, 세

-
- 17) i = interest payments on government debt divided by gross general government debt

π = weighted average of inflation rates at time t and 3 lagged periods

g = weighted average of real GDP growth rates at time t and 3 lagged periods

GD = gross general government debt

Y = nominal GDP

$$\text{Debt servicing costs} = i - \pi - g) \cdot \frac{GD_{t-1}}{Y_{t-1}}$$

출 모두를 증가시키지만 세출탄력성이 커 기초재정수지의 악화 및 국가채무의 증가를 야기하는 반면, 대외개방도 및 Debt-Servicing costs의 증가는 세입탄력성이 커 기초재정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변수인 the power dispersion index가 클수록 즉, 권력집중도가 약할수록 세입·세출이 증가하지만 기초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좌파 성향이 강해질수록 기초재정수지 및 국가채무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단기식에 대한 추정결과에서도 error correction term의 coefficient가 모두 negative sign을 보이고 모두 statistically significant하여 장기식이 잘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회귀분석결과를 이용하여 국가채무/GDP에 대한 International Government Debt Comparison(IGDC) Index를 계산해 본 결과([그림 V-2] 참조) 모두 1980년대 전반의 몇 년을 제외하고는 100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이 작은 정부 및 건전재정을 지향하였음을 시사한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3저 현상에 따른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입·세출이 급증하지는 않아 국가채무의 부담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및 1999년부터 IGDC 지수가 여전히 100 이하이나 점진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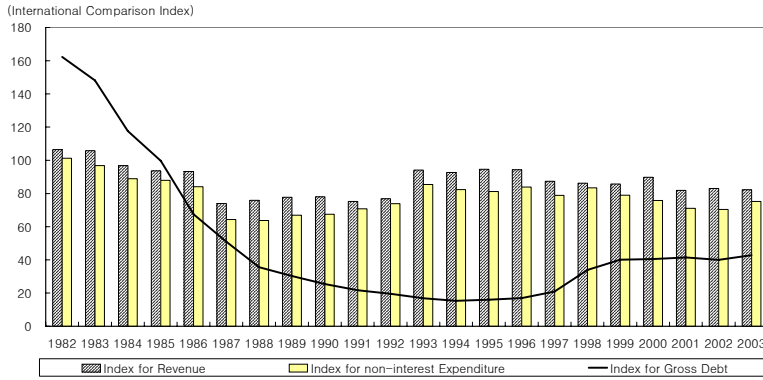
18) Roubini and Sachs(1989a, 1989b)에서는 권력집중도가 약할수록 재정수지가 악화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이후 De Haan and Sturm(1997) 등에서는 POL1 변수와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Roubini and Sachs(1989b), Comisky(1993), De Haan and Sturm(1994) Cusack(1995) has proposed non-defense government spending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strength of leftist parties in government. Empirical works with government revenue and fiscal balance in Huber et al.(1994) and Cusack(1997) suggested that left-dominated governments were more fiscally conservative than right-dominated governments.

<표 V-10> 장·단기식의 추정결과

[Long-term]						
	T/Y	G/Y	PB/Y	PB/Y	GD/Y	GD/Y
C	-64.588 (29.906)	-98.217 (28.073)	27.217 (13.361)	27.107 (13.177)	-210.757 (123.521)	-241.902 (132.244)
ln(PCGDP1)	17.365 (6.638)	25.527 (6.226)	-6.513 (3.019)	-6.562 (2.985)	54.508 (27.513)	58.939 (29.276)
ln(PCGDP1)^2	-1.009 (0.364)	-1.492 (0.340)	0.383 (0.167)	0.393 (0.166)	-3.302 (1.509)	-3.370 (1.601)
OLD	1.841 (0.109)	1.944 (0.127)	-0.118 (0.060)	-0.124 (0.061)	4.621 (0.492)	4.218 (0.479)
OPEN	0.045 (0.006)	0.033 (0.007)	0.015 (0.003)	0.016 (0.003)	0.065 (0.045)	-
DSC	0.508 (0.088)	0.354 (0.098)	0.122 (0.056)	0.140 (0.055)	2.852 (0.467)	2.731 (0.469)
POL1	1.619 (0.177)	1.518 (0.214)	0.124 (0.115)	-	-1.192 (0.830)	-
POL2	0.880 (0.178)	0.593 (0.199)	0.262 (0.111)	0.227 (0.104)	-4.532 (0.809)	-4.059 (0.770)
Adj. R2	0.701	0.604	0.103	0.118	0.248	0.236
# of obs	551	561	551	568	568	585
[Short-term]						
	T/Y- T/Y(-1)	G/Y- G/Y(-1)	PB/Y- PB/Y(-1)	PB/Y- PB/Y(-1)	GD/Y- GD/Y(-1)	GD/Y- GD/Y(-1)
Error Correction	-0.029 (0.010)	-0.056 (0.010)	-0.195 (0.024)	-0.194 (0.024)	-0.010 (0.006)	-0.010 (0.006)
GAP	-	-	-	-	-0.518 (0.068)	-0.502 (0.066)
UR_DIFF	-	0.584 (0.085)	-0.668 (0.077)	-0.655 (0.077)	1.202 (0.220)	1.255 (0.214)
OLD-OLD(-1)	-	-	-	-	3.464 (0.850)	3.793 (0.869)
OPEN-OPEN(-1)	-0.041 (0.016)	-0.141 (0.021)	0.077 (0.019)	0.077 (0.019)	-0.158 (0.050)	-0.152 (0.049)
DSC-DSC(-1)	0.322 (0.073)	0.309 (0.106)	-	-	0.690 (0.250)	0.568 (0.237)
POL1	-	0.102 (0.026)	-	-	-	-
POL2	0.080 (0.022)	-	-	-	-	-
Adj. R2	0.071	0.315	0.263	0.253	0.317	0.300
# of obs	524	536	548	565	552	569

주: () 안은 White Heteroskedasticity-consistent standard error

[그림 V-2] 우리나라의 IGDC Index



VI. 결 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다양한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국가부채의 정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국가부채 증가의 추이와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다른 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선진국들은 1990년대부터 이미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 우려를 시작하였고 대부분의 검증결과들이 국가부채 수준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줌에 따라 본격적인 재정건전화와 국가부채 감축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미국, 영국을 포함한 몇몇 국가들은 국가부채 수준을 줄이는 데 성공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장기 경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경우 아직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Bohn's test, Tax Gap test, IGDC(국제국가부채비교) 지수,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해보았다. 첫째, Bohn's test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증가할 경우 정부가 이전보다 기초재정수지를 개선하면 재정의 유지가능성이 확보됨을 보여주는 검증방법이다. 본 연구는 이 방법을 세 가지 자료와 두 가지 모형에 적용하였다. 먼저 자료는 정부의 공식 발표 자료(data 1), 국민연금기금 흑자, 외국환평형채권을 제외하고 정부 상환 공적자금부채를 추가한 조정 자료(data 2), 순융자를 제외한 조정 자료(data 3)의 세 가지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모형은 구조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Benchmark 모형의 경우와 재정운영의 근본적 변화(1982 더미)와 외환위기까지 포함한(1983-1997 더미) 구조변화 모형,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Bohn's test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Benchmark 모형의 경우 세 가지 자료 모두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

다. 그러나 구조조정 모형의 경우, data 1을 사용한 모형은 1982더미를 사용한 경우 국가부채는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1983~1997 더미를 사용한 경우 지속가능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data 2를 사용한 모형은 1983~1997 더미를 사용한 경우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data 3을 사용한 모형 또한 1983~1997 더미를 사용한 경우 지속가능성이 확인된다. 따라서 정치적 변화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지속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Tax Gap test는 향후 재정지출 전망치에 기초하여 현재 및 미래의 재정정책 기조가 국가채무의 누적을 야기하는지를 점검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입수준을 나타내는 지속가능한 세율(t^*)과 현재의 세입수준을 나타내는 현재의 세율(t)과의 차이로 정의되는 tax gap을 계산함으로써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다. 이 경우 tax gap인 t^*-t 가 음수이면 국가부채가 지속가능하게 된다. Tax Gap test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기(1년)와 중기(5년)적으로는 우리 국가부채는 지속가능하나, 장기(40년 및 66년)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IGDC지수는 국가부채의 실적치와 그 나라의 사회·경제·인구 구조·재정·정치변수를 고려한 예상치를 비교하여 그 나라의 국가부채의 규모가 과도한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실적치가 예상치보다 크면 그 나라의 국가부채는 그 나라의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과도하게 큼을 의미한다. IGDC 지수 방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과도하게 컸으나 그 이후 예상치보다 줄어들었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직 예상치보다는 낮지만 다시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단거나 중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향후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잠채부채,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저하, 고령화·저출산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에 각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기획예산처,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2005년 9월
- 최준욱·전병목,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재정정책(I) : 조세정책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03-08, 2003년
- KDI, 『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중간보고서, 2004년 8월
- Abel, Mankiw, Summers and Zeckhauser, "Assessing Dynamic Efficiency: Theory and Evidence," *Review of Economic Studies* 56, 1989, pp. 1~20.
- Ahmed, S, and J. H. Rogers, "Government Budget Deficits and Trade Deficits are Present Value Constraints Satisfied in Long-run Data?"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6, 1995, pp. 351~374.
- Barro, Robert J., "On the Determination of the Public Deb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7, No. 5, pt. 1, 1979, pp. 940~971.
- _____, "U.S. Deficits Since World War 1," *Scand. Journal of Economics* 88(1), 1986, pp. 195~222
- Blanchard, Olivier J., "Debt, Deficits, and Finite Horiz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3, No. 2, 1985, pp. 223~247.
- Blanchard, Oliver, Jean-Claude Chouraqui, Robert P. Hagemann and Nicola Sartor, "The Sustainability of Fiscal Policy : New Answers to An Old Question," *OECD Economic Studies*, No. 15, Autumn 1990.

- Blanchard, O. Chouraqui, J. Hagemann, P. and Sartor, N., "The Sustainability of Fiscal Policy : New Answers to an Old Question," *OECD Economic Studies* No. 15 Autumn 1990, pp. 7~36.
- Bohn, Henning, "The Behavior of U. S. Public Debt and Deficit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utumn 1998, pp. 949~963.
- Broda, C., and David Weinstein, "Happy News from the Dismal Science: Reassessing Japanese Fiscal Policy and Sustainability", *NBER WP* 10988, Dec. 2004.
- Buiter, Willem H., "Notes on "A Code For Fiscal Stability"", *NBER WP* 6522, April 1998.
- Comisky, M. "Electoral Competition and the Growth of Public Spending in 13 Industrial Democracies, 1950 to 1983,"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26, 1993, pp. 350~374.
- Cusack, T. "Partisan Politics and Public Finance: Changes in Public Spending in the Industrialized Democracies,"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ur Sozialforschung Discussion Paper*, FS I, 1995, pp. 95~313.
- Cusack, T. "Partisan Politics and Fiscal Policy,"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ur Sozialforschung Discussion Paper*, FS I, 1997, pp. 97~306.
- de Haan, J. and Strum, J., "Political and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Fiscal Policy in the European Country," *Public Choice*, Vol. 80, 1994, pp. 157~172.
- de Haan, J. and Strum, J., "Politic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budget deficits and government expenditures: A reinvestigation,"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3, 1997, pp. 739~750.

- Elmendorf, Douglas W. and N. Gregory Mankiw, "Government Debt", *NBER WP* 6470, March 1998.
- Hakkio, C. S. and M. Rush, "Is the Budget Deficit 'Too Large'?" *Economic Inquiry*, Vol. 29, 1991, pp. 429~445.
- Hamilton, J.D. and M. Flavin, "On the Limitations of Government Borrowing: A Framework for Empirical Testing," *American Economic Review* 76, 1984, pp. 808~819.
- Hemming, Richard and Murray Petrie, "A Framework for Assessing Fiscal Vulnerability," *IMF WP/00/52*, March 2000.
- Huber, E., Ragin C. and Stephens, J. (1994) "Social Democracy, Christian Democracy, Constitutional Structure, and the Welfare Stat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9, pp. 711~749.
- IMF,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overnment Expenditure," Occasional Paper No. 10, 1982.
- IMF,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Government Expenditure Revisited: The Developing Countries, 1975-86," *Occasional Paper* No. 69, 1990.
- Kremers, J. M., "Long-run Limits on the U.S. Federal Debt," *Economic Letters*, Vol. 28, 1988, pp. 259~262.
- Persson, T. and Guido Tabellini, *Political Economics: Explaining Economic Policy*,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2000.
- Roubini, N. and Sachs, J., "Politic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budget deficits in the industrial democracie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3, 1989a, pp. 903~938.
- Roubini, N. and Sachs, J., "Government spending and budget deficits in the industrial countries," *Economic Policy*, Vol. 8, 1989b, pp.

99~132.

- Trehan, B. and C. E. Walsh, "Common Trends, the Government Budget Constraint, and Revenue Smoothing,"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Vol. 12, 1988, pp. 425~444.
- Valderrama, D., "Fiscal Sustainability and Contingent Liabilities from Recent Credit Expansions in South Korea and Thailand," *FRBSF Economic Review 2005*, 2005, pp. 29~41.
- Woo, J., "Economic, political fiscal balances? :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 determinants of changes in OECD budget balances," ECB Working Paper Series, No. 422, 2003.

<국문요약>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나성린 · 박기백 · 박형수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다양한 검증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제Ⅱ장 및 제Ⅲ장에서는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국가부채의 정의를 살펴보고 국가채무 규모를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IMF기준 이외의 기준으로 측정해 보고, 2070년까지 향후 65년 동안의 우리나라 채정을 전망하여 국가채무 증가규모를 추산해 보았다. 한편,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외에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국가부채 증가의 추이와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특히 미국 및 일본에 대해서는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한 연구결과들을 정리하였다.

제Ⅴ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을 Bohn's test, Tax Gap test, IGDC(국제국가부채비교)지수 등 3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해 보았다. 검증결과들을 요약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단기나 중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나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향후 예상되는 국민연금의 잠재부채,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저하, 고령화·저출산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는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에 각별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Debt

Seong-Lin Na · Kibaek Park · Hyung-soo Park

The aim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some reliable empirical evidences for the controversy of the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debt. In doing so, we need to reconsider the definition of government debt. This is because most debates on the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debt in Korea center around the scope of government debt.

Once we have agreed on the scope of government debt, we then need to find out if it is sustainable. There are various means of testing the sustainability of government debt. This paper uses Bohn's test, Tax Gap test, IGDC(International Government Debt Comparisons) Index. The main result of these tests is that, based on the IMF definition, the government debt in Korea is sustainable in short or medium term, but may not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著者略歷>

나성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영국 Oxford대 경제학 박사
현,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박기백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Wisconsin-Madison대 경제학 석·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형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경제학 박사
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

2006년 12월 22일 인쇄
2006년 12월 29일 발행

저 자 나성린 · 박기백 · 박형수
발행인 최용선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번지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 및 (주) 천 세
인쇄

© 한국조세연구원 2006

ISBN 89-8191-352-8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5,000원